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남명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작 성 | 남명진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연지 경제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관
홍채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02) 6788-3777 | ei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2026.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11.1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Ⅰ. 개요 / 1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1

2. 평가의 구성 및 방법 ····· 5

Ⅱ.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와 사업 현황 / 7

1.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 ····· 7

가. 개요 ····· 7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의 ····· 7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재난 유형 분류 ····· 9

(3) 최근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 11

(4)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 16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 18

(1) 의의 ····· 18

(2) 추진절차 ····· 19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 28

(1) 의의 및 연혁 ····· 28

(2)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30

(3) 재난안전사업 평가 절차 ····· 34

(4)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 ····· 36



CONTENTS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예산 현황 ····· 41

가. 최근 5년간 사업 및 예산 현황 ····· 41

나. 2027년도 사업 및 예산안 현황 ····· 47

(1) 부처별 예산안 ····· 47

(2) 재난 분야·유형별 예산안 ····· 49

(3) 회계·기금별 예산안 ····· 51

(4) 활동단계별 예산안 ····· 53

(5) 2027년 신규 편입 예정 사업 ····· 54

Ⅲ. 주요 쟁점 분석 / 5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류체계 분석 ····· 56

가. 활동단계 분류기준 개선 필요 ····· 56

나. 재난유형별 분류 세분화 필요 ····· 59

다. 연구개발사업의 재난안전사업 내 편입 필요 ····· 66

라.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목록의 조속한 확정 필요 ····· 71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분석 ····· 75

가.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 75

(1) 부처별 분석 ····· 76

(2) 재난유형별 분석 ····· 79

(3) 활동단계별 분석 ····· 81

나.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불일치 사업 ····· 82

(1) 투자확대 등급 중 정부안 감액 사업 ····· 82

(2) 투자축소 등급 중 정부안 증액 사업 ····· 85



CONTENTS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분석 ····· 87

가. 반복적인 성과부진 최소화 필요 ····· 87

(1) 연례적인 성과부진 문제 ····· 87

(2) 평가결과와 예산안의 연계 강화 필요 ····· 90

(3) 상위평가 관리 강화 필요 ····· 92

나.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 필요 ····· 96

4.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102

가. 추진체계 현황 ····· 102

나. 추진조직 및 제도 정비 필요 ····· 103

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 효율화 필요 ····· 108

Ⅳ. 결론 및 시사점 / 114

요 약

Ⅰ. 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기능이며,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중요성 대두

- ○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2025년 대형산불·집중호우·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공공서비스 중단 초래
- ○ 재난안전 재정은 재난의 발생가능성, 피해규모, 취약계층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
- ○ 정부는 2015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16년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안전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를 운영 중임

❑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분류체계, 예산 사전협의, 사업평가, 범부처 추진체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분류체계 측면에서 활동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분류기준의 법령체계 정합성, 재난유형 분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시하는 사전협의안의 투자등급이 정부예산안과 연계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불일치 사례를 파악함
- ○ 평가 제도가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성과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 다부처 사업인 재난안전사업의 추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함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개요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구성 및 방법
Ⅱ.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와 사업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의 및 재난유형 • 최근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 2027년도 예산안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류체계 분석	• 활동단계 분류기준의 적정성 • 재난유형별 분류의 적절성 • 연구개발사업의 편입 필요성 검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사전협의 제도 분석	•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연계 점검 • 사전협의안과 예산안의 불일치 사례 파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분석	• 연도별·부처별 평가결과 점검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적정성 검토 • 통합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 점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체계 분석	• 추진체계 및 추진조직 점검 • 평가 제도의 효율성 점검
Ⅳ.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현황

1. 재난안전사업 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하 “재난안전사업”)은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서 수행되는 공공부문 사업을 의미함

❑ (재난의 분류)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사회재난 분야(18개 유형), 안전사고 분야(9개 유형), 공통 분야(5개 유형) 등 4개 분야·41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 사전협의와 투자우선순위 선정의 기본 틀로 활용

❑ (예산 사전협의)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예산요구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유지·축소 등급을 포함한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됨

❑ (사업평가 및 환류) 2016년부터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투자등급 등에 환류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2026년부터는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평가 대상에 재난안전사업이 포함됨

2. 재난안전사업 예산

❑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2022년 21.9조원에서 2026년 25.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예산안은 24.8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약 0.8조원(3.2%) 감소함

 ○ 2027년도 예산안은 27개 부처·431개 사업으로, 정부 총지출(820.9조원) 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부처요구안 25.6조원보다 약 0.8조원 감액 편성됨

[2022~2027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부처 수[1)]	29	28	26	26	27	27
사업 수[2)]	451	436	436	430	437	431
재난안전사업 예산(a)	21.9	23.6	25.1	23.8	25.6	24.8
정부 총지출(b)	607.7	638.7	656.6	673.3	727.9	820.9
비중(a/b)	3.6	3.7	3.8	3.5	3.5	3.0

주: 1)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소관부처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2) 2023년까지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수를 산정하였고, 2024년부터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Ⅲ. 주요 쟁점 분석

1. 사업 분류체계 분석

가. 활동단계 분류기준 개선 필요

❑ (대비·대응 통합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사업의 활동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대비와 대응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법령체계와 정합하지 않고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성과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방	273	165,831	164,030	162,147	△3,684	△2.2
대비·대응	125	26,215	28,515	24,949	△1,266	△4.8
복구	33	64,051	63,221	60,801	△3,250	△5.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 (개선방안)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세부사업은 내역사업별로 분류하거나 주요 기능에 따른 합리적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대비와 대응을 별도 집계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 성과지표를 구분할 필요

나. 재난유형별 분류 세분화 필요

❑ (폭염 유형 부재)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2020~2024년 자연재해 인명피해 442명 중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295명에 달하지만,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목록에는 폭염 유형에 편성된 세부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폭염 활동이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감염병,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등 다른 재난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재난유형별 실제 재정투입 규모와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자연재난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풍수해	43	44,829	43,814	41,776	△3,053	△6.8
산사태	2	3,509	2,884	2,770	△739	△21.1
가뭄	7	11,913	12,818	13,284	1,370	11.5
지진	5	684	834	899	214	31.3
조류	1	272	345	460	188	69.0
합계	58	61,207	60,695	59,189	△2,020	△3.3

자료: 행정안전부

❑ (개선방안) 세부사업의 대표 유형만 분류하는 현행 방식에 더하여, 중점투자 재난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형을 내역사업 단위로 세분화하여 재난유형별 재정투입과 사업성과를 연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다. 연구개발사업의 재난안전사업 내 편입 필요

❑ (연구개발사업 제외)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재난안전사업에 포함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사전협의 대상이라는 사유로 2024년부터 이를 제외함

[2022~2023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부처 수	사업 수	예산	부처 수	사업 수	예산
연구개발(R&D) 사업	14	56	4,934	12	44	3,800
비 연구개발(R&D) 사업	29	395	214,226	28	392	232,475
합계	29	451	219,160	28	436	236,275

주: 부처 수의 합계는 중복을 제거한 순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분야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요인을 탐지·제거하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은 재난안전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

○ 연구개발사업 제외 시 재난위험 대응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이 재난안전사업의 중점투자방향·사전협의·평가·환류 대상에서 분리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재난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으로 재편입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중복평가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결과를 공유받아 예산 사전협의 등에 반영할 필요

라.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목록의 조속한 확정 필요

❑ (사업 수·예산액 불일치) 2027년도 정부안에서 과목구조 개편으로 분리·이관된 49개 사업, 1조 466억원은 정부예산안에 예산액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심사 시 재난안전사업의 실제 구성과 투자규모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부처 요구단계에서 25개 사업 3,456억원, 기획예산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24개 사업 7,010억원이 구조개편된 것으로, 2026년 10월 현재까지 재난사업 목록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2027년도 예산안 재난안전사업 미편입 사업(구조조정 유형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 수	2027년 부처요구안	2027년 정부예산안
과목구조 개편(각 부처)	25	990,323	345,624
과목구조 개편(기획예산처)	24	-	700,951
합계	49	990,323	1,046,575

자료: 행정안전부

❑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기간 중 관련 사업의 편입 목록을 조속히 확정·제출하고, 차년도부터는 정부안 제출 전까지 기획예산처와 과목구조 개편 사항을 확정하여 사업 수와 예산액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2. 예산 사전협의 제도 분석

가.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간 연계 강화 필요

❑ (사전협의안 등급별 차별성 축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투자확대(핵심사업)은 전년 대비 12.6%, 일반 확대사업은 7.1% 증액되고 축소등급은 20.8% 감액되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투자등급의 전반적인 경향은 유지되었으나, 기획예산처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확대사업 증액 폭과 축소사업 감액 폭이 모두 축소됨

○ 투자확대(핵심사업)의 정부안 증감률은 12.6%로 부처요구안 19.8%보다 7.2%p 낮고, 일반 확대사업도 19.8%에서 7.1%로 12.7%p 하락함. 투자확대 사업(핵심사업 포함)과 축소등급 사업의 증감률 격차도 부처요구안 48.5%p에서 정부예산안 30.8%p로 17.7%p 축소됨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2027년			
	본예산 (A)	부처요구안 (B)	(B-A)/A	정부안 (C)	(C-A)/A
투자확대(핵심사업)	35,638	42,688	19.8	40,141	12.6
투자확대	32,118	38,491	19.8	34,414	7.1
투자유지	93,978	95,663	1.8	89,701	△4.6
투자축소	55,282	39,425	△28.7	43,796	△20.8
2026년 종료 등	173	-	△100.0	-	△100.0
사전협의 대상 아님	38,908	39,499	1.5	39,846	2.4
합계	256,097	255,766	△0.1	247,897	△3.2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처별·재난유형별·활동단계별 불일치) 국토교통부·산림청의 일반 확대등급 사업은 정부안에서 감액으로 전환되고, 경찰청·국토교통부·식약처의 축소등급 사업은 오히려 증액되는 등 투자등급과 예산안 증감 방향의 불일치 사례가 다수 확인됨. 재난유형 및 활동단계별로도 불일치 사례 존재

나.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불일치 사업

❑ (투자확대 등급의 정부안 감액) 사전협의안에서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8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총 감액규모는 전년 대비 3,266억원이며, 일부 투자확대(핵심사업)도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 사업은 국가하천정비(△1,118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104억원), 산림헬기 도입·운영(△337억원) 등임

[2027년도 사전협의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 등급 사업 중 정부안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전협의안→정부안)	부처	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정부안	증감액
확대(핵심)→감액	기후부	국가하천정비	745,361	633,557	△111,804
확대(핵심)→감액	산림청	산사태재난경계피난	32,347	25,524	△6,823
확대→감액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735,983	625,586	△110,397
확대→감액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	193,826	160,155	△33,67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투자축소 등급의 정부안 증액) 사전협의안에서 투자축소 등급을 받은 사업 중 8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2,891억원(20.6%)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사업은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1,901억원 증액),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494억원 증액) 등임

[사전협의 투자등급과 정부안 증감방향이 불일치한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전협의안→정부안)	부처	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정부안	증감액
축소→증액	국토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595,552	785,692	190,140
축소→증액	국토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760,561	809,931	49,37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투자등급을 결정할 때 재난안전 측면의 정책적 중요성과 재원소요·집행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투자등급과 반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증감사유와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3. 사업 평가 제도 분석

가. 반복적인 성과부진 최소화 및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 (반복적 미흡사업) 2022~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37개 사업이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방송통신재난관리, 식품관리 운영 등 다수 사업이 3회 미흡 판정을 받음

○ 2022년 수립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2년 연속 미흡사업에 재설계·컨설팅, 3년 연속 미흡사업에 원칙적인 폐지를 제시했으나 일부 반복 미흡사업이 계속 추진됨

○ 다만 상대평가 실시에 따라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부진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반복적인 미흡 횟수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실제 정책효과가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 (평가결과와 예산연계 강화 필요) 최근 반복 미흡사업 중 2026년에도 미흡 평가를 받은 축산식품안전관리, 원자력안전규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도림천일대침수방지 사업 등은 2027년도 정부안에서 증액됨

○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은 2026년 21억원에서 2027년 260억원으로 238억 5,800만원(1,113.8%) 증가하였으며, 경비대테러역량강화는 107.8% 증가함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반복적 미흡 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26년 평가	2026년 예산	2027 예산안	증감률
농식품부	축산식품안전관리	미흡	2,161	4,479	107.3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62,989	64,089	1.7
질병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미흡	3,907	6,946	77.8
해경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미흡	17,503	36,372	107.8
기후부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	미흡	2,142	26,000	1,113.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선방안) 반복적인 미흡 원인을 이상기후·재난 발생 등 외생적 요인과 사업설계·집행·지표 등 개선 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과부진의 원인이 외생적인 경우에는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재난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정 재정규모를 재검토하고, 부처의 노력으로 개선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방식 변경, 사업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보다 근본적인 사업재설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

나. 상위평가 관리 강화 필요

❑ (부적정 판정의 반복)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상위평가에서 일부 부처는 부적정 판정을 받고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법무부는 2023~2026년 4회 연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2025년 3회 연속 부적정 판정을 받음

❑ (개선방안) 재평가 미실시 등 후속조치를 미이행한 부처에 대하여 부처 차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증빙자료·평가서류 기준의 적정성도 점검하여 형식적 심사부담을 완화하여 피평가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다.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 필요

❑ (우수 등급 사업의 예산안 감액)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11개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1개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2,969억원 대비 459억원(15.5%) 감소함

○ 산림헬기도입·운영,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 등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였으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7년 정부안에서는 감액되었음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통합재정사업 평가	2027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	우수	감액	△33,671	△17.4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우수	감액	△4,008	△21.7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우수	감액	△2,236	△16.4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안 증액)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승강기 안전관리개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2027년 정부안에서 증액되었음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정상추진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통합재정사업 평가	2027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미흡	정상추진	△239	△3.8
질병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미흡	정상추진	1,307	18.3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정상추진	1,100	1.7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 (개선방안) 평가목적의 차이를 고려하되 결과가 상반된 사업에 대한 해석·조정 및 최종 예산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의 정책효과와 재정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평가결과 연계절차를 마련할 필요

4. 추진체계 분석

가. 추진조직 및 제도 정비 필요

❑ (지원조직 등 취약)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2025회계연도 대상) 291개 사업·14.1조원 규모의 재난안전사업 평가와 2027년도 425개 사업·21.6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 인력은 1개과 3명에 불과하여 사업별 투자적정성 심층 검토와 미흡사업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국 5과와 전문지원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는 행정안전부 1개과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일부 인력이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조직 기반이 취약함

❑ (예산조정 권한의 한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투자 확대·유지·축소라는 우선순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액을 직접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함

❑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전협의안의 정부예산안 반영·미반영 사유를 기획예산처와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나. 평가 제도 효율화 필요

❑ (중복평가 부담) 2026년 시작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와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모두 받게 되어 평가부담 가중

○ 피평가부처는 2026년부터 동일한 재난안전사업에 대하여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겹치는 중복적인 두 평가를 유사한 시기(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임

○ 통합재정사업평가의 경우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지출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비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각 부처가 평가에 대응하는 우선순위가 낮아져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개선방안) 두 평가제도 간 중복 평가항목·절차를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되, 나아가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피평가부처 부담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사업평가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Ⅳ.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재난위험과 재정투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 법령상 구분된 대비·대응 단계를 별도 관리하고, 세부사업에 복수 재난유형이 포함된 경우 내역사업 기준의 보조분류를 도입하여 폭염 대응 예산 등 재난유형을 정확히 식별할 필요

○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에 재편입하고, 과목구조 개편사업의 목록을 정부예산안 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국회에 적기 제출할 필요

❑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투자우선순위가 정부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사전협의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 투자확대·핵심사업의 정부예산안 감액과 투자축소사업의 증액 등 사전협의 등급과 정부예산안 간 불일치 사례에 대하여 정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과 재원소요를 함께 검토하여 투자등급과 재원배분 간 정합성 제고

○ 기획예산처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 셋째, 재난안전사업 평가가 반복적인 성과부진을 개선하고 예산안에 환류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

○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외생적 위험 변화와 개선 가능한 집행·설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근본적인 사업재설계를 검토할 필요

○ 반복적으로 상위평가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처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 넷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조직을 보강하고, 재난안전사업의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필요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재난안전사업 전담조직 및 전문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평가부처의 중복평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기능이며,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집중호우·산사태 등 자연재난의 강도와 피해가 확대되는 한편, 도시의 고밀화와 기반시설의 복잡화 등에 따라 다중운집인파사고, 항공교통 재난·사고, 대형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도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빈도·고피해 재난은 발생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 차례 사고가 국민 안전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2024년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이어 2025년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집중호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7명(사망자 31명 포함)[1]과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초래하였고, 같은 해 집중호우도 사망 27명, 실종 2명과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인터넷우체국·나라장터 등 709개 서비스가 중단[2]되는 등 재난의 영향이 물리적 피해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국가기반 기능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202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대형산불, 같은 해 3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26년 8월 26일에는 네팔·중국·티베트 접경지역의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1) 행정안전부, 「초대형 산불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고」, 업무보고 자료(2025.9.)

2)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보도자료(2025.12.30.)

한편 최근 5년간 재난유형별로 피해양상이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재난유형별 피해 위험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자연재난은 풍수해의 재산피해가 연평균 9,208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폭염은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재난에서는 도로교통 재난·사고와 화재의 인명·재산피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항공·선박 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역시 발생빈도는 낮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재난안전 재정은 단순히 과거 발생건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보다 발생가능성, 피해규모, 취약계층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주요 재난유형별 연평균 피해현황]

(단위: 건, 명, 억원)

분야	재난유형	연평균 발생건수	연평균 인명피해[1)]	연평균 재산피해
자연재난	풍수해	464	49 (28)	9,208
	폭염	15	2,108 (21)	421
사회재난	화재	38,302	2,392 (315)	9,294
	도로교통 재난·사고	200,853	291,138 (2,761)	27,672
	다중운집인파사고	0.2	99 (32)	-

주: 1) 인명피해는 사망자(실종자 포함) + 부상자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괄호 안에 표시함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7년 재난안전사업예산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보고서」(2025)

이에 따라 정부는 다부처 재정사업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하 “재난안전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2022년 21.9조원에서 2026년 25.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대 중반(2026년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도 재난안전사업에는 431개 사업, 약 24.8조원이 편성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부처 수[1)]	29	28	26	26	27	27
사업 수[2)]	451	436	436	430	437	431
재난안전사업 예산(a)	21.9	23.6	25.1	23.8	25.6	24.8
정부 총지출(b)	607.7	638.7	656.6	673.3	727.9	820.9
비중(a/b)	3.6	3.7	3.8	3.5	3.5	3.0

주: 1)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소관부처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2) 2023년까지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수를 산정하였고, 2024년부터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사업은 2015년 이전까지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각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편성·관리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위험도와 투자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조정하기 어려웠고, 유사·중복 투자와 사업효과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 총괄기관이 각 부처의 투자계획과 예산요구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2015년 시범운영하고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피해현황과 위험전망 등을 종합하여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중기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투자확대·투자유지·투자축소)를 담은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안전부의 사전협의안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투자방향이 차년도 예산안에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전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차년도 투자등급 산정에 환류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재난안전 분야의 한정된 재원을 위험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다음 연도 투자에 환류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난안전사업의 사전협의 제도와 사업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현행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류체계 측면에서 활동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분류기준의 법령체계 정합성, 재난유형 분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재정당국에 제시하는 사전협의안의 투자등급이 정부예산안과 연계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셋째,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가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성과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 특히 2026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통합재정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다부처 사업인 재난안전사업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평가의 구성 및 방법

본 보고서는 201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운영되어 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재정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에서 재난안전사업의 분류체계, 예산 사전협의, 사업평가 제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업의 분류·편성 현황과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27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연도별 재해연보·재난연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정부·공공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 및 관련 학술 자료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26년부터 실시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처별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와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보고서 제Ⅰ장에서는 평가의 배경 및 목적, 평가의 구성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어 제Ⅱ장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의와 재난유형을 살펴보고, 최근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와 사업평가 제도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의 예산 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주요 쟁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분류체계 분석에서는 활동단계 분류기준의 적정성, 재난유형별 분류의 적절성, 연구개발사업의 편입 필요성 등을 점검하였다. 사전협의 제도 분석에서는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간의 연계 정도를 점검하고, 사전협의 투자등급과 실제 정부예산안의 증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사업평가 제도 분석에서는 연도별·부처별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부처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 상위평가의 적정성, 2026년부터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분석에서는 추진조직의 역량 및 평가제도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의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구성 및 방법
Ⅱ.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와 사업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의 및 재난유형 • 최근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 2027년도 예산안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류체계 분석	• 활동단계 분류기준의 적정성 • 재난유형별 분류의 적절성 • 연구개발사업의 편입 필요성 검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사전협의 제도 분석	•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연계 점검 • 사전협의안과 예산안의 불일치 사례 파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분석	• 연도별·부처별 평가결과 점검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적정성 검토 • 통합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 점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체계 분석	• 추진체계 및 추진조직 점검 • 평가 제도의 효율성 점검
Ⅳ.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와 사업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

가. 개요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재난(災難)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를 의미한다. 또한 안전(安全)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4]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란 뜻하지 않게 발생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감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제3조에서 정하고 있

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다. 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있다. 사회재난으로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494개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작성하였고, 해당 목록을 활동단계별로 분석하여 주요 기능을 위험요인 제거·저감(예방단계에 해당), 감시·예측·경보(대비 단계), 즉각 대응체계 구축(대응 단계), 피해 회복 및 사회안정 지원(복구 단계)로 정의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활동단계	주요기능	사업 예시
예방	위험요인 제거·저감	• 식약처(2026) :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 질병청(2026)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대비	감시·예측·경보	• 기상청(2024) :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 기상청(2026) :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대응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산림청(2026) :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 해수부(2026)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복구	피해 회복 및 사회안정 지원	• 해수부(2024) : 어업인 안전보험 • 질병청(2026) : 질병 연구 기반 조성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에 대한 법률상 정의를 기반으로 사전적 정의, 사업목록 기반 정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대상으로 그 발생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수행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의미한다.[6]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재난 유형 분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의 대상 사업을 재난·안전의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공통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유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부처별 개별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다. 이러한 41개 유형 분류체계는 재난안전사업의 선정 기준이자, 예산 사전협의와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산정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

먼저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해로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의 9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요인이나 국가기반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가장 많은 18개 유형을 포함하는데, 화재와 산불, 시설 재난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대기·수질·토양·해양 등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과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도로교통·철도교통·항공교통·선박 등 교통 재난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전시재난·테러가 이에 해당한다. 안전사고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승강기, 등산·레저, 전기·가스, 생활제품, 의료제품, 식품 사고와 범죄, 사업장 산재, 농·수산업 사고의 9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통 분야는 특정 재난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재난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 구호 및 복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해외재난 관리, 재난안전관리체계의 5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사업선정 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2025)

[재난안전사업상 재난의 분야 및 유형]

분야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재난 (9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사태		▸「사방사업법」 제2조의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뭄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 등 가용 수자원(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황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조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한파		▸겨울철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폭염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낙뢰 등 기타		▸낙뢰,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물체 추락·충돌, 「전파법」에 따른 전파 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사회재난 (18개)	화재	화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불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시설 재난사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예방 등 사업
	다중운집인파사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위면적 당 군중밀도 증가로 군중의 흐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화생방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화학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환경 오염 사고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수질오염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철도교통 재난사고	▸「철도안전법」 제2조의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항공교통 재난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분야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사회재난 (18개)	교통 재난·사고	선박 재난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시재난·테러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사업
안전사고 (9개)	생활안전	승강기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등산·레저 사고	▸등산, 레저활동(수상레저 포함)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기·가스 사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생활제품 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의료제품 사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	사업장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농·수산업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공통 (5개)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조, 구급과 관련된 사업
	재난 구호 및 복구		▸「재해구호법」 제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을 위한 사업
	안전취약계층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관련된 사업
	해외재난 관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외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성을 지닌 사업 중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 * 교부세,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점검, 조사, 진단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최근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형재난 등 최근 5년간 재난피해 통계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 통계에 따른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를 보고하고 있다.

동 연구원이 2025년말에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27년 재난안전사업예산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난·사고는 자연재난 9개, 사회재난 18개, 안전사고 9개 유형에서 발생하였고,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분야·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재난은 인명·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안전사고는 사업장 산재 등의 사망피해가 두드러지는 반면 자연재난은 폭염유형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풍수해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난은 산사태가 연평균 7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조류 630건, 가뭄 483건, 풍수해 464건 순이며, 재산피해는 풍수해가 연평균 9,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산사태도 1,197억원에 달한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는 풍수해가 연평균 28명 사망으로 가장 많지만, 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폭염이 사망 21명, 부상 2,087명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최근 온열질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7)]

다음으로 사회재난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발생이 연평균 70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 재난·사고도 연평균 20만 853건으로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모두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도로교통 재난·사고의 사망자가 연평균 2,761명으로 사회재난 중 가장 많고, 부상자도 28만 8,377명에 달한다. 재산피해는 도로교통 재난·사고가 연평균 2조 7,672억원으로 가장 크며, 국가핵심기반 마비 1조 1,683억원, 화재 9,294억원, 시설 재난·사고 5,819억원 등의 순이다.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의료제품 사고 34만 5,636건, 사업장 산재 12만 3,831건, 범죄 7만 8,627건 등의 발생건수가 많으며, 사업장 산재의 사망자가 연평균 839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국가핵심기반 마비는 연평균 1건에 불과하지만 재산피해액은 1조원을 상회[8)]하였고, 다중운집인파사고[9)]도 연평균 0.2건이지만 사망자가 연평균 32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빈도·고피해 재난의 특성이 확인된다. 또한 선박재난·사고는 연평균 사망자가 120명인데 2024년에는 162명으로 증가[10)]하였고, 식

7) 최근 5년간 폭염 인명피해(사망자/부상자): '20년 9/1,069명 → '21년 20/1,356명 → '22년 29/1,555명 → '23년 32/2,786명 → '24년 34/3,670명 (출처: 행정안전부)

8) 대부분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액으로 재산피해액은 5.83조원이다.

9) 다중운집인파사고 유형에는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9명이 포함되었다.

10) 최근 5년간 선박 재난·사고 사망자: '20년 126명 → '21년 120명 → '22년 99명 → '23년 94명 → '24년 162명 (출처: 행정안전부)

품사고에 따른 식중독 환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11]하는 등 일부 유형에서 최근 피해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재난·사고 유형별 연평균 발생 및 피해현황('20~'24년)]

(단위: 건, 명, 억원)

분야	유형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자수[1]	부상자수	계	
자연재난	풍수해	464	28	21	49	9,208
	산사태	787	5	-	5	1,197
	가뭄	483	-	-	-	229
	지진	82	-	-	-	2
	황사	16	-	-	-	-
	조류	630	-	-	-	-
	한파	5	10	373	383	222
	폭염	15	21	2,087	2,108	421
	낙뢰 등 기타	-	-	-	-	-
사회재난	화재	38,302	315	2,077	2,392	9,294
	산불	520	3	7	10	3,670
	시설 재난·사고	974	5	72	77	5,819
	다중운집인파사고	0.2	32	67	99	-
	방사능 재난·사고	15	-	-	-	-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96	5	76	81	39
	대기오염	122	-	-	-	-
	수질오염	132	-	-	-	-
	토양오염	53	-	-	-	-
	해양오염	255	-	-	-	-
	감염병 (코로나19 포함)	7,030,248	9,318	-	9,318	-
	감염병 (코로나19 제외)	115,737	2,197	-	2,197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801	-	-	-	834
	도로교통 재난·사고	200,853	2,761	288,377	291,138	27,672
	철도교통 재난·사고	63	23	22	45	28
	항공교통 재난·사고	8	42	5	47	7
	선박 재난·사고	3,017	120	385	505	-
	국가핵심기반 마비	1	-	-	-	11,683
	전시재난·테러	-	-	-	-	-
안전사고	승강기 사고	61	7	56	63	-
	등산·레저 사고	9,006	153	3,536	3,689	-
	전기·가스 사고	476	28	439	467	-
	생활제품 사고	58,103	-	-	-	-
	의료제품 사고	345,636	-	-	-	-
	식품 사고	270	-	5,496	5,496	-
	범죄	78,627	30	563	593	-

11) 지난 4년간 식중독 환자 수: '20년 2,534명 → '21년 5,160명 → '22년 5,501명 → '23년 8,789명

(단위: 건, 명, 억원)

분야	유형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자수[1]	부상자수	계	
	사업장 산재	123,831	839	-	839	-
	농·수산업 사고	716	10	-	10	-

주: 1) 실종자 수를 포함
1.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2020~2024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치임
2. 이 표의 수치는 집계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다른 통계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25년도 통계는 현재 작성중으로 2026년 12월경 공개될 예정임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7년 재난안전사업예산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보고서」(2025)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5년간('20~'24년)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사회재난과 안전사고는 재난대책본부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대형재난에 대한 피해 분석을 별도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형재난은 풍수해, 한파와 같은 자연재난이 13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 등 사회재난은 123건 발생했고, 사업장 산재와 같은 안전사고는 9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형재난의 지속기간은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에서 전반적으로 길고 유형 간 편차도 컸다.[12] 자연재난은 풍수해가 1회당 평균 8.7일, 한파가 17.0일 지속되어 사회재난에 비해 지속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며, 풍수해의 최장 사례는 2023년 호우·강풍·풍랑으로 31일간 지속되었다. 사회재난은 감염병 1,228일,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309.8일, 시설 재난·사고 277.4일, 도로교통 재난·사고 168.0일 등의 순으로 평균 지속기간이 길어 유형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28일간 지속되어 전체 재난 중 가장 장기간 지속된 사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1,157일간 지속되어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의 장기화 특성을 보여준다. 안전사고는 사업장 산재가 평균 91.7일로 가장 길고, 전기·가스 사고 39.6일, 식품 사고 7.0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산재 중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는 144일간 지속되었다. 국가핵심기반 마비는 평균 49.7일이나 의사 집단행동은 분석기간 기준 313일간 지속되어, 시설의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보건의료·물류 등 필수서비스의 기능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의 지속기간은 사고 자체의 물리적 발생기간이라기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곧바로 실제 피해가 동일한 강도로 계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형재난 지속기간('20~'24년)]

구분		지속기간[1] (일/1회)	단기 지속 사례		최장기 지속 사례	
			내용	일수(일)	내용	일수(일)
자연재난	풍수해	8.7	('24.11.26.~11.28.) 대설·강풍·풍랑 피해	3	('23.6.27.~7.27.) 호우·강풍·풍랑	31
	한파	17.0	('23.4.11.~4.27.) 4월 한파	17	-	-
사회재난	화재	52.3	('24.8.2.) 부산 금정구 욱성화학 공장 화재	1	('23.12.18.~) 인천 그랜드팰리스 호텔 화재	380[2]
	산불	2.9	('23.4.2.) 부여 산불	1	('22.3.4.~3.13.)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10
	시설 재난·사고	277.4	('23.12.24.~12.28.) 청주시 눈썰매장 비닐하우스 붕괴	5	('20.9.2.~'22.7.13.) 구리시 교문동 지반침하 사고	680
	다중운집인파사고	34.0	('22.10.30.~12.2.) 이태원(10.29.)참사	34	-	-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3.0	('21.3.19.) 충남 논산 타코마테크놀로지(주)공장폭발 사고	1	('20.2.17.~2.21.) 질산 탱크로리 전복 화재사고	5
	수질오염	64.0	('24.1.12.~3.15.)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64	-	-
	해양오염	11.0	('24.12.21.~'25.1.24.) 유구천 유류유출사고	11[2]	-	-
	감염병	1,228.0	('20.1.20.~23.5.31.) 코로나19	1,228	-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309.8	('23.5.11.~6.15.) 구제역	36	('21.11.1.~'24.12.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157
	도로교통 재난·사고	168.0	('21.7.20.~7.22.)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3	('23.3.9~'24.11.27.) 전국동시조합선거 순창군 구림면 투표소 트럭 사고	630
	항공교통 재난·사고	3.0	('24.12.29.~'25.5.7.) 12·29 여객기 참사	3[2]	-	-
	선박 재난·사고	14.5	-	1	('20.8.6.~9.29.)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55
	국가핵심기반 마비	49.7	('23.12.6.) 울산 남구 및 울주군 일부지역 정전사고	1	('24.2.23.~'25.10.19.) 의사 집단행동	313[2]
안전사고	전기·가스 사고	39.6	('20.1.25.~'20.2.3.) 동해 토바펜션 폭발사고	10	('23.10.10.~'23.12.22.) 서산시 읍내동 폭발사고	74
	식품 사고	7.0	('24.7.4.~7.10.) 남원시 학교 집단 식중독	7	-	-

구분		지속기간[1] (일/1회)	단기 지속 사례		최장기 지속 사례	
			내용	일수(일)	내용	일수(일)
	사업장 산재	91.7	('20.4.29.~6.20.)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53	('24.6.24.~11.14.)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144

주: 1) 유형별 개별 재난의 평균 지속일수임
2) '24.12.31. 이후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인 재난의 경우 피해현황 분석기간('20~'24년)을 고려하여 '24.12.31. 기준으로 지속일수 산정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7년 재난안전사업예산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보고서」(2025)

(4)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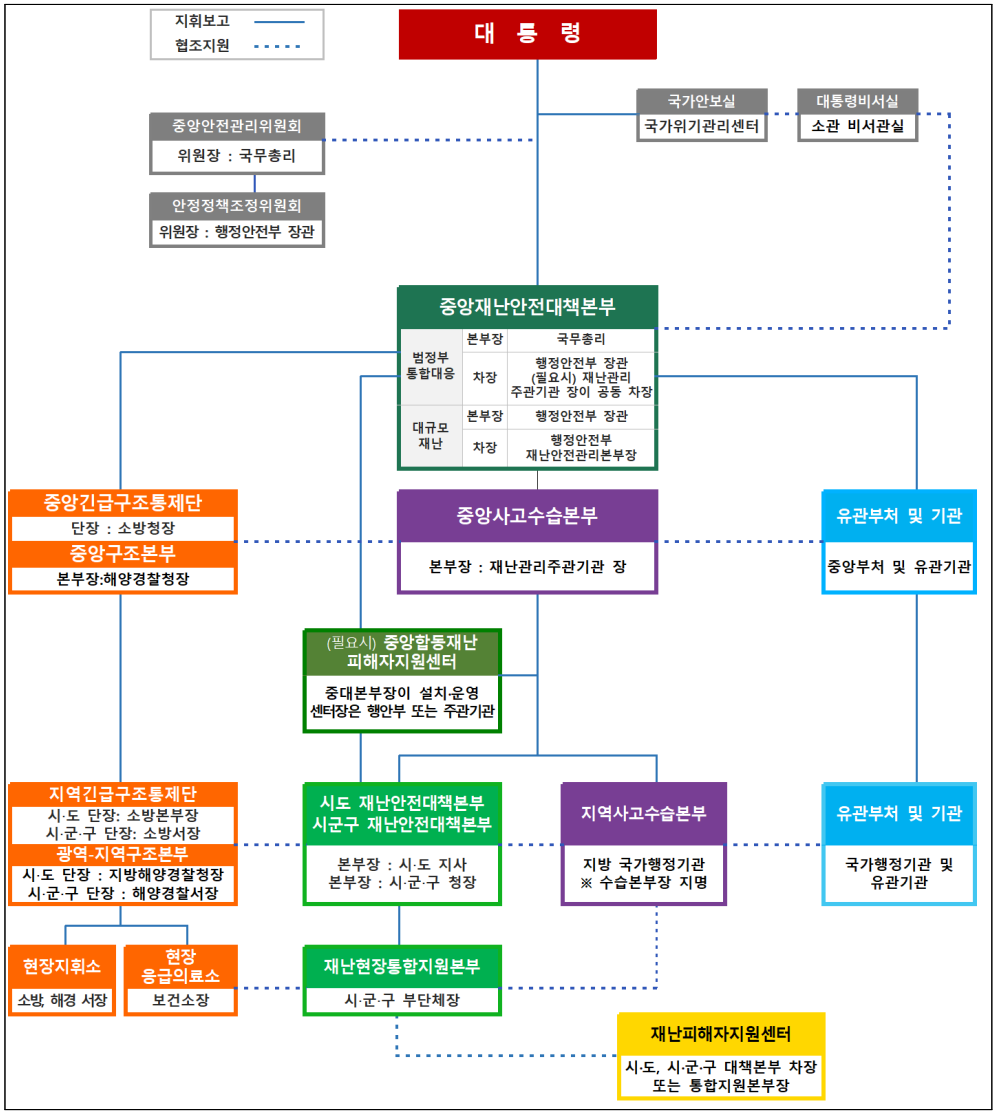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는 다음 종합체계도에서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휘, 보고,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응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 종합체계도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지휘, 보고, 협력관계를 체계화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이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를 총괄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재난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지만,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 각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협조·지원하는 방식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대응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휘·보고·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하여 재난에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정책 수립·조정과 대규모 재난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할지역의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므로,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다만 본 보고서는 분석대상을 중앙정부가 수행

하는 재난안전사업으로 한정하여,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편성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업의 분류체계, 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제도 등을 분석한다.

[국가재난관리 대응 종합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1) 의의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3]에 따라 정부 내 재난안전 예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으로, 유사·중복 투자와 사업 간 우선순위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제시하여 투자의 중복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예산 장치로서 사전협의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사전협의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 전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사업 성격상 사전협의가 불필요하거나 별도 배분 절차가 존재하는 일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요구한 431개 사업(25.6조원) 중 사전협의를 실시한 사업은 425개 사업(21.6조원)으로, 교부세, 교부금, 예비비 등 6개 사업이 제외되었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사전협의는 크게 중점투자방향 수립, 투자우선순위 선정, 사전협의(안) 마련, 확정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각 부처가 재난안전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2~3월 중 피해현황·전망, 부처 계획, 정부정책 등을 종합한 여건분석과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한다. 그 이후 4~5월 중 사업별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요구서를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초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반영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협의(안)를 마련한 뒤, 6월 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통보한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주요 추진절차]

구분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전협의(안)	확정
내용	• 중기사업계획 제출(각 부처) • 중점투자유형 분석 • 재난안전 정책 반영 • 민간전문가 자문 추진 • 중점투자방향 수립	• 중점투자방향 연계 • 사업별 투자계획 분석 • 민간전문가 검토(배점) • 사업별 투자등급(안) 마련 • 부처요구안 제출(각 부처)	• 예산요구서 반영, 부처 의견수렴 • 투자등급 조정회의 개최(평가자문위) •사전협의(안) 마련	• 중앙위 심의 • 기획처 통보
추진시기	1~3월말	4~5월말	6월초	6월말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중점투자방향 수립

최근 2년간 국내·외에서 대형재난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역대 최대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7월에 집중호우,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이 잇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 주요 재난·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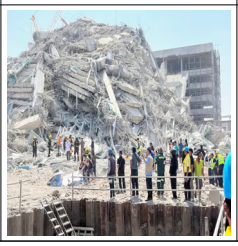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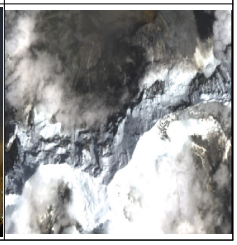
구분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집중호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발생 시기	'25.3.21.~30.	'25.7.16.~20.	'25.9.26.	'26.3.20.
주요 피해	사망 31명, 부상 156명, 재산피해 1조 818억원	사망 27명, 실종 2명, 재산피해 1조 848억원	709개 서비스(정부24, 인터넷우체국 등) 중단	사망 14명, 부상 60명
내용	경남 산청, 경북,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초대형 산불로 확대, 건조한 날씨·강풍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 피해 발생	시간당 강수량일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산사태, 토사유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피해 확산	전산실 리튬배터리 교체 중 화재로 해당 전산실 전소 등 피해가 발생	공장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급속도로 확산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사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에서도 202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대형산불, 같은 해 3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26년 8월 26일에는 네팔·중국·티베트 접경지역의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재난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기후변화, 도시밀집, 인프라 취약성, 관리 부실 등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해외 주요 재난·안전사고]

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산불	미얀마·태국 지진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	네팔·중국·티베트 접경 빙하 붕괴·대홍수[1)]
발생 시기	'25.1월	'25.3월	'25.11월	'26.8.26.
주요 피해	사망 31명, 피해면적 193.8㎢ 이상	미얀마 사망 5,456명이상, 태국 사망 34명이상	사망 168명	사망 1,400명이상, 실종 약 5,700명

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산불	미얀마·태국 지진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	네팔·중국·티베트 접경 빙하 붕괴·대홍수[1)]
내용	극히 적은 강수량 등 기후여건으로 인한 강한 산불 확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10㎞ 내외의 얕은 깊이에서 규모 7.7의 지진 발생	리모델링 중이던 아파트 단지의 저층 보수 공사 자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6개 동으로 피해 확산	네팔 랑탕 리룽 빙하의 대규모 얼음·암석이 붕괴하면서 토석류가 하천으로 유입돼 급격한 홍수 발생
사진				

주: 1) 사진 출처: USGS Landsat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최근 재난·사고 발생현황과 향후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난안전예산 분류유형 41개 중 36개 유형을 대상으로 피해현황, 언론이슈, 위험전망을 각각 분석하고, 그 순위를 합산하여 유형별 투자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재난은 풍수해, 폭염, 산사태 등의 순서로, 사회재난은 항공교통 재난·사고, 화재, 감염병, 도로교통재난·사고의 순서로, 안전사고는 사업장 산재, 전기·가스 사고, 식품 사고 등의 순서로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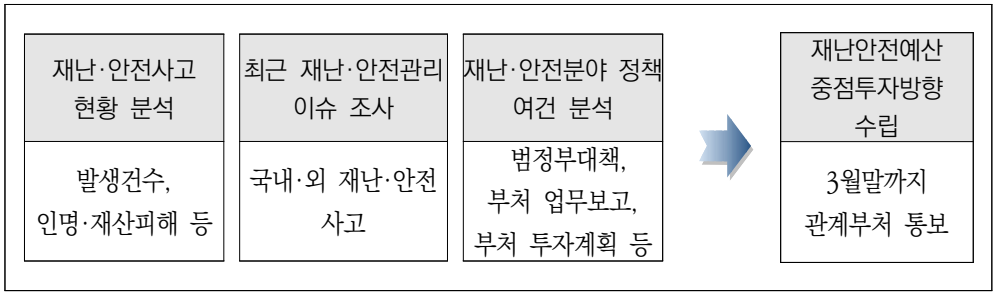
[재난유형별 투자우선순위]

구분	투자우선순위
자연재난	풍수해 〉 폭염 〉 산사태 〉 한파 〉 가뭄 〉 지진 〉 황사 〉 조류 〉 낙뢰 등 기타
사회재난	항공교통 재난·사고 〉화재 〉 감염병 〉 도로교통 재난·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 시설 재난·사고 〉 산불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수질오염 〉 해양오염 〉 국가핵심기반 마비 〉 대기오염 〉 선박 재난·사고 〉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철도교통 재난·사고 〉 전시재난·테러 〉 토양오염 〉 방사능 재난·사고
안전사고	사업장 산재 〉 전기·가스 사고 〉 식품 사고 〉 등산·레저 사고 〉 범죄 〉 의료제품 사고 〉 농·수산업 사고 〉 생활제품 사고 〉 승강기 사고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현황, 최근 재난·안전관리 이슈, 위험전망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투자우선순위 결과와 재난·안전분야 정책 여건 등을 종합하여 2027년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중점투자방향 수립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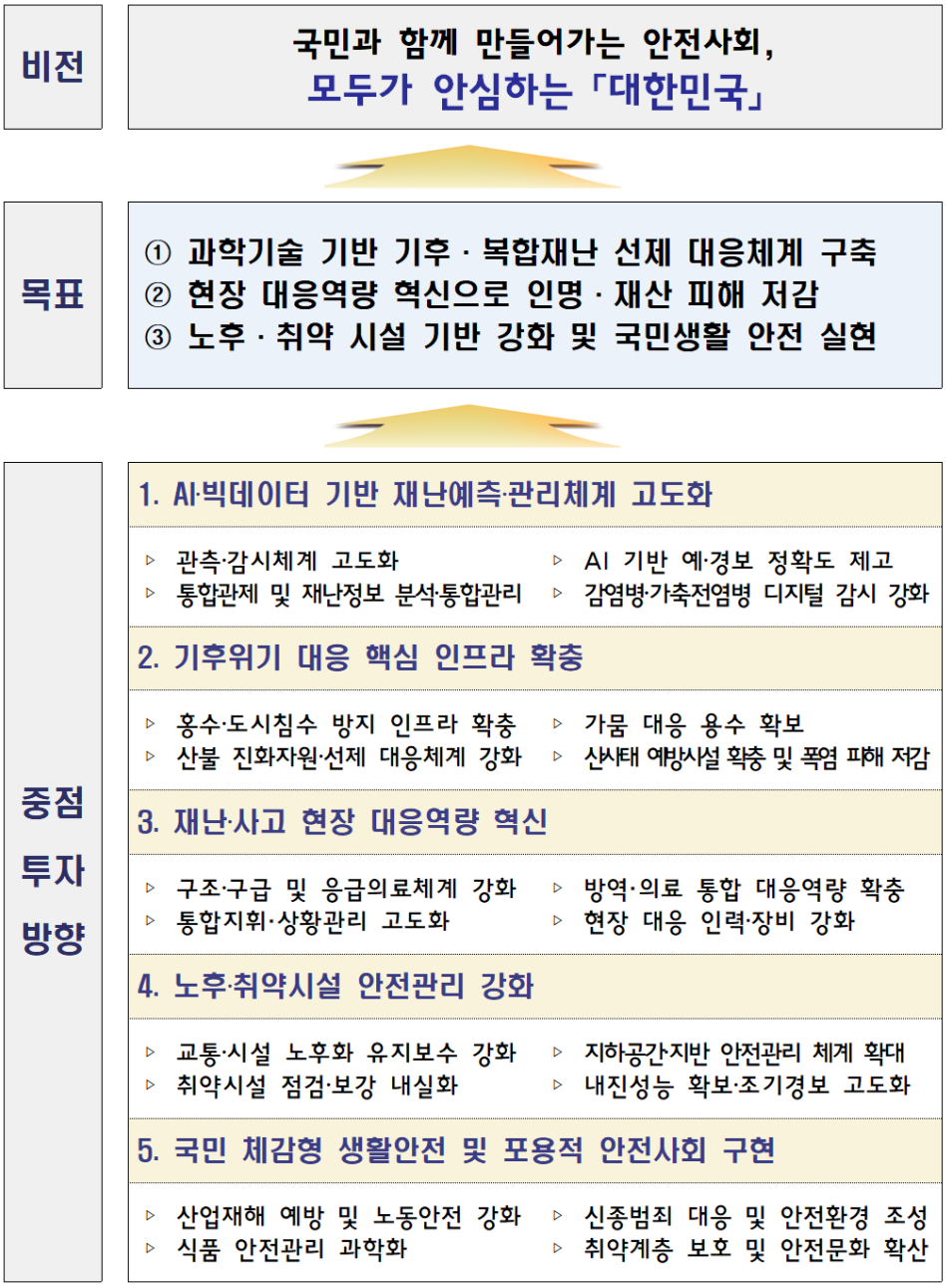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기반 기후·복합재난 선제 대응체계 구축, 현장 대응역량 혁신으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 노후·취약시설 기반 강화 및 국민생활 안전 실현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7년 재난안전예산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반 재난예측·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관측·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감염병 디지털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치수 인프라 확충과 가뭄·산불·폭염 대응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며, 셋째, 응급의료체계와 통합지휘·상황관리, 대응인력·장비를 보강하여 재난·사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혁신할 계획이다. 넷째,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와 취약시설 점검·내진보강 등 노후·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다섯째, 산업재해 예방과 신종범죄 대응,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생활안전과 포용적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2027년도 중점투자방향은 최근 재난환경 변화와 위험전망을 반영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투자와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어지는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중점투자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② 투자우선순위 선정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을 수립하는 절차는 사업별 분석을 통해 투자등급(안)을 선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전협의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과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기초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재정사업 평가결과·투자여건 등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들이 사업별 평점을 부여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협업과제(안)을 마련한다. 그 이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종합검토를 거친다.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은 크게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40점), 재정사업 평가 결과(35점), 투자 여건(25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은 피해현황 및 위험전망, 사업내역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감점할 수 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와 일정한 가점을 반영하고, 복권기금·일자리사업·균형발전 등 타 재정사업 평가결과도 활용한다. 투자여건은 부처가 제시한 투자우선순위 의견과 중점투자방향과의 연계 수준을 평가하며, 국정과제나 범정부 대책 등과 연계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가 투자우선순위의 주요 배점요소로 설정되어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안의 투자등급 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사업평가와 예산편성 간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재정사업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은 재정사업 평가결과 배점 35점을 제외한 65점 만점의 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2026년부터 실시한 통합재정사업평가의 결과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사업 평가점수 산정에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총 100점)]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40점)	재정사업 평가 결과 (35점)	투자 여건 (25점)
•피해현황 및 위험전망(10) •사업내역 적정성(15) •사업의 기대효과(15) •[감점] 사업의 집행가능성(-3)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①+②) ① 평가결과(35), ② 가점(+3) •타 재정사업 평가* 결과(35) * 복권기금,일자리사업,균형발전	•부처 투자우선순위 의견(10) •중점투자방향 연계 수준(15) •[가점] 국정·범정부 대책 등 연계(+5)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여된 사업별 점수에 부처의 차년도 예산요구액을 함께 반영하고, 재난안전예산 유형별 배분을 거쳐 투자등급(안)을 마련한다. 투자등급은 재난안전예산 유형별로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 투자유지, 투자축소 등 3개 분야로 구분하며,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투자확대 30~40%, 투자유지 50~60%, 투자축소 10~20% 범위에서 등급(안)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확대 등급 사업 중 각 부처의 중점추진 여부와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별도로 선정한다.

③ 사전협의(안) 수립 및 확정

행정안전부는 1단계에서 마련된 재난안전사업별 투자등급(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정책 연계성 등 정량평가만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를 검토한다. 이후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투자등급을 최종 확정한다.

즉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제도는 투자우선순위(투자등급)를 선정할 때 개별 재난안전사업의 필요성과 그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 재난유형별 투자수요 및 부처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을 구체화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14]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를 실시한 대

14) 행정안전부,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사업 총 25.6조원 요구」. 2026.7.1.

상은 총 425개 사업, 부처 예산요구액은 총 21조 6,267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투자확대 129개(사업 수 기준 30.4%), 투자유지 212개(49.9%), 투자축소 84개(19.8%)를 배정하였다. 투자확대 사업 가운데 정책적 중요성과 연계성이 높은 43개 사업(10.1%)은 핵심사업으로 별도 선정하였으며, 핵심사업의 부처요구액은 약 4.3조원이다. 2027년도 사전협의안에 따른 투자우선순위는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약 절반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난예측·기후위기 대응 등 우선 분야에는 재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투자우선순위(등급) 선정 결과]

구분	계 (A+B+C)	투자확대 (A)	(핵심사업)	투자유지 (B)	투자축소 (C)
사업 수	425개	129개	(43개)	212개	84개
비중	100.0%	30.4%	(10.1%)	49.9%	19.8%
부처요구액	21조 6,267억원	8조 1,179억원	(4.3조원)	9조 5,663억원	3조 9,42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확대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상·대기·해양 등 관측·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재난예측 및 관리체계 고도화, 둘째, 산업재해 예방, 식중독 관리, 범죄예방·대응,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셋째,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과 긴급구조·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사업, 넷째, 국가하천 정비(기후부), 농촌용수 개발(농식품부),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행안부) 등 홍수·가뭄·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분야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확대 사업 중 핵심사업 43개는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사고의 관측 및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기후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유산청),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해수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과기정통부) 등이 핵심사업에 포함되었다.

투자유지 분야는 국가어항 관리(해수부), 하수관로 정비(기후부) 등 장기간 계

속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항공안전교육훈련(국토부), 재난방송 운영 지원(방미통위), 안전평가원 관리운영(식약처), 국가태풍센터 운영(기상청) 등 법정 교육·평가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요구액의 변동이 크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성격을 가진다.

투자축소 분야에는 제도개선이나 사업물량 감소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부처 내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기상기후교육(기상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소방청), 소규모댐 건설(기후부), 친환경항만하역장비 구축지원 사업(해수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7년도 사전협의안 투자등급별 주요 현황]

투자등급	투자방향	주요사업[1)]
투자확대	•재난예측·관리체계 고도화: 기상 등 관측·감시체계 강화	지상·고층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기상청, 221억원),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기후부, 507억원),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해수부, 421억원)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산업재해 예방, 식품안전, 범죄예방·대응, 교통약자 보호 등 일상생활 안전 강화	근로자건강보호(노동부, 656억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식약처, 101억원), 전자감독(법무부, 329억원), 교통사고예방지원(국토부, 222억원) 등
	•현장 대응역량 확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및 긴급구조·응급의료체계 강화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179억원), 전국소방헬기 통합관리운영지원(소방청, 125억원), 현장대응역량강화(소방청, 26억원) 등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홍수 대비 치수 인프라 확충, 가뭄 대응 용수 확보, 산불 진화자원 강화	국가하천정비(기후부, 6,660억원), 농촌용수개발(농식품부, 1,890억원),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1,621억원)
(핵심사업)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사고의 관측 및 감시체계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기후부, 546억원),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유산청, 340억원),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해수부, 421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과기정통부, 569억원) 등
투자유지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어항·항만시설 유지, 하수관로 정비 등 장기간 계속되는 기반시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	국가어항관리(해수부, 281억원), 하수관로정비(기후부, 7,943억원) 등
	•교육·훈련 및 운영: 법정 직무교육·평가 및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 지속	항공안전교육훈련(국토부, 19억원), 재난방송운영지원(방미통위, 28억원), 안전평가원관리운영(식약처, 103억원), 국가태풍센터운영(기상청, 11억원) 등

투자등급	투자방향	주요사업[1)]
투자축소	•제도개선이나 사업물량이 감소한 사업, 부처 내 투자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등의 예산 축소	기상기후교육(기상청, 26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소방청, 24억원), 소규모댐건설(기후부, 44억원), 친환경항만하역장비 구축지원(해수부, 2.5억원) 등

주: 1) 사업별 예산액은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27년도 부처요구안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1) 의의 및 연혁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에 따라 추진되는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 개선과 다음 연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는 2016년 주요 재난안전사업 83개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7년부터 R&D 사업을 제외한 모든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정식평가가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각 부처가 1차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2차 메타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우수사업 선정·포상과 차년도 투자등급 결정에 반영되었다. 2018년에는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가 당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대체하도록 연계가 강화되었고, 행정안전부 평가에 재난유형별 상대평가가 추가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메타평가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의 유형별 상대평가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에는 R&D·균형발전·복권 등 다른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1년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한 평가 면제와 미흡사업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개선대책 수립이 도입되었고,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방식이 부처별 상대평가로 변경되는 한편, 미흡사업에 대해 10% 지출구조조정이 의무화되는 등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가 강화되었다.

2023년부터는 평가체계가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 행정안전부는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2024~2025년에는 자체평가의 책임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결과 반영, 점수 부여 적절성 점검, 불성실 평가 부처의 우수사업 비율 축소 및 지출구조조정 계획 점검 등이 추가되었다. 2026년에는 기획처의 통합재정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평가도 효과성 중심으로 조정되어, 인명피해 감소 등 축적된 평가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함께 효과성 관련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되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의 연혁]

연도	주 요 내 용
2016	• 주요 재난안전사업 83개 대상 시범평가 실시
2017	• 모든 재난안전사업(R&D 제외) 대상 정식평가(2단계) 최초 실시 • (1차)부처, 상대평가 → (2차)행안부, 메타평가(1차 결과 적정성 검토) • 우수사업 선정·포상, 차년도 투자등급 결정 시 평가결과 반영(25%)
2018	•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결과 대체 • (1차)부처, 상대평가 → (2차)행안부, 메타평가 + 유형별 상대평가 • 차년도 투자등급 결정 시 평가결과 반영 확대(40%)
2019	• 메타평가 폐지 : (1차)부처, 상대평가 → (2차)행안부, 유형별 상대평가 • 차년도 투자등급 결정 시 평가결과 반영 조정(30%) •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비 확보
2020	• 타 재정사업평가(R&D, 균형발전, 복권 등) 대상사업 평가 제외
2021	• 우수사업('20년 상위 10%, 3년연속 우수) 평가 제외 • 미흡사업 개선대책 수립
2022	• (1차)부처, 상대평가 → (2차)행안부, 부처별 상대평가 •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10% 삭감) 의무화(기재부 예산편성지침)
2023	• 부처 자체평가 중심 운영, 상위평가는 자체평가 결과 적정성 점검 (1차)부처, 자체평가 → (2차)행안부, 상위평가(자체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2024	• '23년부터 변경된 평가제도 안착과 부처 책임성 제고 * (자평) 행안부 컨설팅 결과 반영 신설, (상평) 점수 부여의 적절성 신설
2025	• 재평가 미실시 등 자체평가 불성실 부처의 경우 우수사업 비율 축소, 지출구조조정 계획 점검·확인 • 모범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장관표창 등

연도	주 요 내 용
2026	• 기획처 통합재정평가 도입(직접평가, 모든 재정사업을 기획처에서 평가)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명피해 감소 등 그간 축적된 평가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중심 배점 강화(10점 → 15점) 등 • 평가대상 부처 자체평가 위원 행안부 통합교육 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행정안전부는 타 재정사업평가 대상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타 재정사업의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는 일자리 사업(고용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기획예산처 소관), 균형발전 사업(지방시대위원회 소관)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업 중 예비비, 교부세, 분담·보상·보험금, 종료사업, 10억 미만 소규모 사업 등은 평가실익이 적다고 보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사업 수는 2023년 평가 시 251개에서 2025년 평가 시 293개로 크게 증가한 후 2026년에는 291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6.0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여 2025년 13.9조원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 14.1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평가 현황]

(단위: 개, 조원)

연 도	'22년 평가 ('21회계)	'23년 평가 ('22회계)	'24년 평가 ('23회계)	'25년 평가 ('24회계)	'26년 평가 ('25회계)
사업 수	257	251	252	293	291
예산	13.9	16.0	15.7	13.9	14.1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난안전사업의 계획, 관리 및 성과를 평가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사업이 10개 미만인 부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6] 또한 각 부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위원 간 점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된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 자체평가는 계획 25점, 관리 20점, 결과 55점의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계획단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평가의견 및 외부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등 환류·개선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관리단계에서는 계획 대비 일정 준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점검·조치, 사업집행률 및 집행관리 노력 등을 평가한다. 결과단계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와 대응역량 제고 등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성과 확산노력을 평가한다. 이와 별도로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행정안전부 컨설팅 결과 반영, 사업집행 절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부당행위 및 일정 미준수 등의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한다.

[부처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단계 (배점)	평가항목	측정기준	배점(점)	
			신규	계속
계획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10	4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15	6
	환류 및 개선 노력	전년도 평가의견의 반영 정도	-	10
		외부 지적사항 등의 개선 실적	-	5
관리 (2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5	
		사업추진 현황점검 및 조치 실적	7	
	사업 집행의 적정성	사업집행률	5	
		사업 집행관리의 노력도	3	
결과 (55점)	성과 달성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30	
	성과 우수성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15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	10	
가·감점 (+7점/ -3점)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3	
	행안부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 반영		+3	
	사업집행의 절감		+1	

16)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실무·연구개발 경력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이나 평가대상사업 수행기관의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 (배점)	평가항목	측정기준	배점(점)	
			신규	계속
	부당행위 및 일정 미준수 등		-3	
총점			100	

자료: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는 사업별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우수는 상위 20% 이하, 보통은 약 65%, 미흡은 하위 15% 이상으로 등급을 배분하며, 사업 수가 10개 미만인 부처는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각 부처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위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기준]

점검기준	점검항목	배점(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5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10
자체평가 과정의 적정성	평가의견의 명확성·구체성	15
	증빙자료의 적절성	10
자체평가 결과의 정확성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	40
	평가점수 부여의 적절성	20
(감점) 평가절차 준수 여부		(-5)
총 점		100(-5)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 자체평가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상위평가단이 자체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상위평가 배점(100점 만점)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15점, 평가과정의 적정성 25점, 평가결과의 정확성 60점으로 구성된다. 즉 상위평가는 사업을 다시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7]

17) 상위평가는 그 배점기준에서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에 40점, 평가점수 부여의 적절성에 20점을 배정함으로써 자체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상위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부처는 '적정'으로 판정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점수 및 등급을 그대로 인정한다. 반면 70점 미만인 '부적정' 부처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부처의 경우 행안부가 직접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처는 행안부(상위평가단)가 직접 평가한 점수를 기반으로 조정된 등급을 부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재정·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수(pool)는 총 59명으로, 재정·행정 분야 19명(32.2%)과 재난·안전 분야 40명(67.8%)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별로는 교수 41명(69.5%)과 연구기관 연구원 13명(22.0%)이 전체의 91.5%를 차지한다.[1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단위: 명, %)

직종	재정·행정 분야	재난안전 분야	합계
교수	16	25	41
연구기관 연구원	-	13	13
회계사 등	2	-	2
변호사	1	-	1
기업체 임직원 등	-	2	2
합계	19	40	59
(비중)	(32.2)	(67.8)	(100.0)

주: 2026년 9월말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다. 예산 사전협의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적정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사업별 투자등급안을 검토한 후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사업평가(상위평가)에서는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과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모범사업 선정 심사에 참여한다.

18) 행정안전부는 사업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재난안전사업 평가 절차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계획 안내 → 부처 자체평가 →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 부적정 부처 재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환류의 절차로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당해 연도 평가결과는 미흡사업 개선, 다음 연도 사업성과 관리 및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1월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는 2월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자체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부처의 이의신청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상위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상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부처는 4월 중 자체평가를 재실시하며, 행정안전부는 재평가 결과를 다시 점검한 후 4월 말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절차]

1월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행 부처 설명회 개최	행안부
2월	▸부처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각 부처 행안부
3월	▸행안부 상위평가(자체평가 결과 점검) ▸부처 이의신청 및 조정 ▸상위평가 결과 통보(행안부→부처)	행안부 각 부처
4월	▸부적정 부처의 자체평가 재실시 ▸부처 재평가 결과 행안부 재점검 실시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행안부→부처)	해당부처 행안부
5월	▸미흡사업 개선계획 제출(부처→행안부) ▸차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및 통보(행안부→부처)	행안부 해당부처
6~8월	▸미흡사업 개선계획 적절성 검토 및 행안부 컨설팅	행안부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수립 지침 통보	
9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안) 수립 및 제출(부처→행안부)	각 부처
10~11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안) 검토 ▸성과목표·지표(안)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	행안부 각 부처
12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확정 및 통보 ▸차년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	행안부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는 미흡사업의 성과개선, 차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feedback)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체평가의 '환류 및 개선노력' 항목에 반영한다. 또한 2년 연속 미흡사업 및 부처가 희망하는 미흡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과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도 반영된다.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원칙적으로 미흡 등급 사업은 '투자축소', 모범사업은 '투자확대' 대상으로 검토한다. 한편 우수 등급 사업 중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에는 차년도 평가면제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의 환류]

구분	환류 내용
성과개선	• 부처는 미흡 등급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 행안부가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 - 2년 연속 및 부처에서 희망하는 미흡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개선을 위한 행안부 컨설팅 실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 차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반영 - 미흡 등급 사업은 '투자축소', 모범사업은 '투자확대' 원칙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
모범사업	• 우수 등급 사업 중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전협의 시 반영, 차년도 평가면제,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 자체·상위 평가 결과 모두 우수사업 중 후보군을 선정, 자문위 심사를 거쳐 확정

자료: 행정안전부

(4)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

기획예산처는 기존에 부처별로 자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2026년부터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직접 주관하여 민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와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 평가로 이원화되었다.

기획예산처[19]에 따르면,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평가의 관대화 가능성, 객관성·신뢰성 부족 및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통합평가를 도입하였다. 또한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개별평가가 별도로 운영되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복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처의 평가부담이 증가하여, 평가주체를 각 부처에서 재정당국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개별평가를 통합·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9)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2026.5.18.).

[2026년도 재정사업성과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구분	(~'25년) 부처별 자체평가	('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방식	▪ 각 부처가 소관사업 자체평가	▪ 재정당국이 전부처 사업 직접평가
평가단	▪ 각 부처 주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부처별 5인 이상, 1/2이상 민간위원 ▪ 소관부처 공무원 및 해당분야 연구원·교수 중심	▪ 기획처가 통합평가단* 일괄 구성 * 15개 분야, 총 153명 ▪ 민간전문가 중심, 시민사회 포함 (기획처+개별평가 주관부처 참여)
평가대상	▪ 총 1,855개 사업 ▪ 타부처 개별평가 대상* 제외 *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532개)	▪ 총 2,487개 사업 ▪ 부처별 자체평가 + 타부처 개별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 복권기금평가(공익지원) 포함
평가 통합·연계	▪ 평가 주관부처(행안부·고용부·중기부·지방위)에서 평가별 각각 실시	▪ 보조평가·복권기금(공익지원)·균형발전(부처직접편성) 통합 실시 ▪ 재난안전·일자리·중소기업평가는 평가연계, 정책성 평가로 차별화
평가항목	▪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위주	▪ 재정지원 타당성·계획·집행·성과 등 실질적 내용 평가
평가등급	▪ 보통/우수/미흡	▪ 정상추진(우수포함)/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환류	▪ 부처별 자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반영 ▪ 우수사업 별도 인센티브 없음	▪ 평가결과 부처 통보(감액등급 개별사업 △15%이상) → 부처별 예산요구안 반영 ▪ 우수사업은 증액권고, 담당자 포상, 차년도 평가유예
평가결과 공개	▪ 열린재정에 일부 공개(5월) - 사업별 평가등급 -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계획 ※ 평가보고서(원문) 미공개	▪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6월)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조조정 실적(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 평가보고서(원문) 공개(6월), 미반영 사유서 공개(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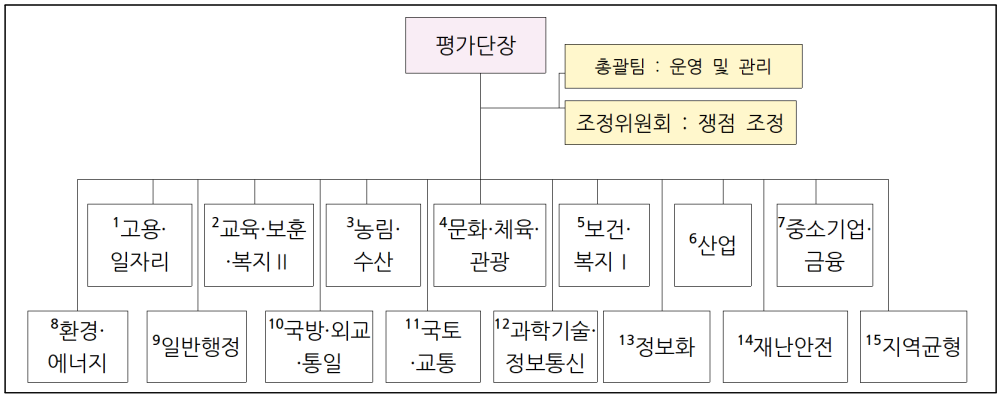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15대 분야, 17개 분과로 구성하고, 서면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단은 평가단장 아래 총괄팀과 조정위원회를 두고, 고용·일자리, 교육·보훈·복지, 농림·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 중

소기업·금융, 환경·에너지, 일반행정, 국방·외교·통일,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화, 재난안전, 지역균형 등 분야별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수가 많은 농림·수산 및 정보화 분야는 각각 2개 분과로 운영되어 전체적으로 17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평가절차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쟁점사업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단 분과별 구성]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항목은 크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정사업 필요성 영역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역에서는 사업내용이 정책목표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지원규모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집행 효율성 영역에서는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영역에서는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뿐 아니라

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및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는지,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지 등을 관련 통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성화 항목을 함께 반영하며, 재난안전사업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고려사항
① 재정사업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여부
	재정지원 필요성	■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민간·지자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유사중복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지원규모 적정성	■ 직·간접 수혜자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③ 집행 효율성		
	집행 적정성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부정수급 등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수행, 실적보고, 공시, 감사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환류 및 개선노력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 달성도·우수성	■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외 사회경제적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여, 국민 체감도·만족도 높은 사업 등 성과의 우수성이 관련 통계를 포함해 근거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 ■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주: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정성평가 위주로 실시되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없음
자료: 기획예산처

평가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구분된다. '정상추진'은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사업개선'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내역사업 통합, 성과지표·추진체계 조정, 비목 전환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감액'은 성과저조나 집행부진 등으로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지',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아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통합'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감액, 폐지, 통합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출구조 조정의 대상이 된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등급]

평가결과	내용
정상추진	사업 효과성·정책적 중요성 인정 등으로 지속 지원 필요
사업개선	내역사업별 통합, 성과지표·추진체계 조정, 비목전환 등
감액	성과저조·집행부진 등으로 예산 규모 감액 필요
폐지	차년도 예산 반영 불가, 유사·중복 등으로 사업 폐지
통합	유사·중복 등으로 관련 사업과 통합

자료: 기획예산처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예산 현황

가. 최근 5년간 사업 및 예산 현황

최근 5년간(2022~2026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2022년 21.9조원에서 2026년 25.6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4년 25.1조원까지 증가한 후 2025년 23.8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는 25.6조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재난안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6%에서 2024년 3.8%까지 상승하였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사업 수는 2022년 451개에서 2025년 430개까지 감소한 뒤 2026년 437개로 증가하였으며, 주관 부처 수도 같은 기간 29개에서 27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부처 수	29	28	26	26	27
사업 수	451	436	436	430	437
재난안전사업 예산(a)	21.9	23.6	25.1	23.8	25.6
정부 총지출(b)	607.7	638.7	656.6	673.3	727.9
비중(a/b)	3.6	3.7	3.8	3.5	3.5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부처별로 재난안전사업의 사업 수 및 규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먼저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5년간 누계 사업 수가 많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285개), 행정안전부(270개), 해양수산부(197개), 국토교통부(189개), 식품의약품안전처(172개) 순으로, 재난·안전 관련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부처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대법원(1개), 국무조정실(2개), 중소벤처기업부(5개) 등의 사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 누계 예산액은 국토교통부 24.0조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9.1조원, 행정안전부 17.8조원, 농림축산식품부 16.4조원, 기획예산처 7.4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다. 반면 대법원(9억원), 국무조정실(54억원) 등은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처별로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사업 수가 2022년 41개에서 2026년 73개로 크게 증가[20]하였고, 예산도 2022년 1.4조원에서 2024~2025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가 2026년 3.8조원으로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수가 2022년 64개에서 2024년 47개로 감소한 이후 2026년 50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예산액은 같은 기간 3.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7개 사업, 4,000억원에서 2025년 15개 사업, 3,559억원으로 사업 수와 예산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는 사업 수가 15개로 유지되는 가운데 예산이 5,26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가 2022년 22개에서 2026년 23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2조 148억원에서 8,212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사업 수가 2025년 11개에서 2026년 4개로, 예산액은 1,442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명[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경찰청	11	2,352	7	1,851	10	3,359	10	3,516	10	3,581
고용노동부	8	10,727	8	11,826	9	12,614	9	12,747	9	15,4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1,713	12	1,521	8	1,072	7	1,015	7	1,009
교육부	4	2,507	2	2,238	3	2,014	2	2,482	2	2,106
국가유산청	1	3	1	3	3	464	3	453	3	614
국무조정실	-	-	-	-	-	-	-	-	2	54
국방부	2	1,604	2	1,096	1	325	1	322	1	317
국토교통부	45	52,860	36	45,561	36	45,966	37	46,208	35	49,627
기상청	23	1,252	20	1,377	23	1,798	23	1,608	23	1,411
기획예산처	2	16,053	2	16,053	2	16,048	2	10,046	2	16,041
기후에너지환경부	41	13,605	39	37,545	68	50,288	64	51,561	73	38,380
농림축산식품부	24	31,271	23	30,456	24	33,347	24	33,273	24	36,120
농촌진흥청	2	257	2	265	2	47	2	50	2	79
대법원	1	9	-	-	-	-	-	-	-	-

20) 2025년 10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이 증가하고 산업통상부 사업이 감소하였다.

(단위: 개, 억원)

부처명[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문화체육관광부	6	142	6	154	-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48	2	37	3	54	3	49	3	83
법무부	3	327	3	364	2	359	2	396	2	411
보건복지부	26	3,840	26	3,877	17	4,000	15	3,559	15	5,261
산림청	8	4,164	8	4,182	8	6,618	8	6,637	8	9,977
산업통상부	11	1,870	10	1,554	14	1,619	11	1,442	4	121
성평등가족부	7	920	7	962	7	1,190	7	1,242	7	1,290
소방청	17	928	32	2,026	29	2,611	30	2,419	29	2,233
식품의약품안전처	37	3,113	36	3,132	33	1,969	33	1,995	33	2,002
외교부	1	146	1	155	2	174	2	158	2	158
원자력안전위원회	8	766	8	1,247	6	1,366	6	1,390	7	1,429
중소벤처기업부	3	226	2	139	-	-	-	-	-	-
질병관리청	22	20,148	20	19,878	21	11,471	23	7,610	23	8,212
해양경찰청	11	2,924	22	5,984	22	6,234	22	6,022	22	6,723
해양수산부	48	14,733	38	11,038	36	8,822	36	8,424	39	9,055
행정안전부	64	30,654	61	31,753	47	37,055	48	33,798	50	44,340
합계	451	219,160	436	236,275	436	250,884	430	238,422	437	256,097

주: 1) 이 보고서에서 부처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으며,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소관부처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하였음. 또한 기획예산처,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부처명이 변경된 경우 2026년 9월말 기준 부처명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재난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도별로 기존 유형의 예산이 확대·축소·미편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이 편입되는 등 유형별 예산 편성에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누계 사업 수가 많은 유형은 풍수해 237개, 재난안전관리체계 164개,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161개, 식품사고 156개, 선박재난·사고 125개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설·한파, 토양오염, 황사는 각각 누계 2개로 사업 수가 가장 적었고, 폭염도 3개에 그쳤다. 예산액 누계로는 풍수해 22조 642억원, 재난구호 및 복구 17조 8,617억원, 도로교통재난·사고 12조 2,138억원, 철도교통재난·사고 11조 4,286억원, 감염병 6조 6,691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반면 대설·한파 2억원, 물놀이사고 46억원, 폭염 51억원 등은 별도 유형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재난유형별로 사업수와 예산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경우 2025년에 기존 '교부세 및 기타' 유형과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 홍보' 유형이 '재난

안전관리체계'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2024년 사업 수 20개, 예산액 1,937억원에서 2025년에는 40개 사업, 2조 2,753억원으로 사업 수와 예산액이 증가하였다. 재난구호 및 복구 역시 2022년 13개 사업, 2조 8,116억원에서 2026년 23개 사업, 4조 9,66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지진은 2022년 30개 사업, 3,464억원에서 2024년에 일부 내역사업이 제외되면서 9개 사업 1,09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수질오염은 2022년 4개·1,780억원에서 2024년 27개·1조 3,503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6년에는 사업 수는 27개로 유지되었으나 예산액은 5,56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홍수 등을 포함한 풍수해 분야는 사업 수가 2022년 52개에서 2026년 45개로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3조 3,006억원에서 4조 4,829억원으로 증가하여 개별 사업의 재정투입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3~2025년에는 매년 약 4.7조원에서 4.9조원 수준의 높은 투자 규모를 유지하였다. 산불도 사업 수가 2022년 2개에서 2026년 4개로 늘고 예산액은 1,230억원에서 3,947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반면 폭염은 2022년 2개 사업, 50억원, 2023년 1개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된 이후 2024~2026년에는 별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분야	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자연재난	풍수해	52	33,006	48	47,865	47	46,252	45	48,690	45	44,829
	산사태	2	2,400	2	2,330	2	2,765	2	3,000	2	3,509
	가뭄	6	11,532	6	11,097	8	12,488	7	12,320	7	11,913
	지진	30	3,464	24	2,239	9	1,095	7	1,345	6	684
	황사	1	139	0	0	1	498	0	0	0	0
	조류	1	712	1	849	1	294	1	302	1	272
	대설,한파	1	1	1	1	0	0	0	0	0	0
	폭염	2	50	1	1	0	0	0	0	0	0
사회재난	화재	11	753	8	255	5	499	6	470	6	655
	산불	2	1,230	3	1,698	4	2,828	4	2,614	4	3,947
	시설 재난·사고	11	972	11	1,076	7	353	6	274	7	303
	방사능재난·사고	11	1,248	10	1,396	8	1,466	8	1,490	9	1,535

(단위: 개, 억원)

분야	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2	118	2	120	7	426	7	531	7	512
	대기오염	24	7,136	14	6,854	13	5,350	12	4,772	12	3,837
	수질오염	4	1,780	4	1,781	27	13,503	26	12,950	27	5,565
	토양오염	0	0	0	0	0	0	0	0	2	122
	해양오염	4	251	4	359	9	1,057	9	1,103	9	1,254
	감염병	18	20,025	16	19,739	18	11,446	19	7,448	19	8,033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11	4,021	11	3,786	10	3,851	10	3,943	9	3,658
	도로교통재난·사고	16	28,455	8	25,356	7	22,604	8	23,213	8	22,510
	철도교통재난·사고	8	19,253	7	19,732	10	23,983	11	23,600	11	27,718
	항공교통재난·사고	13	640	13	711	13	618	13	706	14	834
	선박재난·사고	23	5,134	28	7,635	24	6,914	24	6,478	26	7,216
	국가핵심기반 마비	8	1,260	8	1,199	5	744	5	694	5	748
	전시재난·테러	7	503	8	469	12	1,376	12	1,516	12	1,521
	자살	2	462	2	499	2	519	0	0	0	0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1	43	1	46	1	129	1	59	1	63
	전기·가스사고	3	1,150	3	1,192	7	1,327	6	1,176	6	1,223
	등산·레저 사고	7	182	7	186	0	0	1	10	1	11
	생활제품사고	0	0	0	0	8	500	6	428	6	500
	사업장산재	12	10,971	12	12,092	12	12,687	12	12,819	11	15,509
	농·수산업 사고	4	2,100	4	2,349	3	267	3	247	3	295
	물놀이사고	3	16	3	19	1	11	0	0	0	0
	식품사고	35	3,316	34	3,360	29	2,477	29	2,488	29	2,405
	의료제품사고	8	576	8	567	8	245	9	262	9	299
	범죄	16	2,374	16	2,423	20	3,203	20	3,421	20	3,535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30	2,501	33	2,346	20	1,937	40	22,753	41	24,625
	구조,구급및응급의료	24	2,956	35	3,792	34	4,318	34	4,490	34	5,862
	재난구호및복구	13	28,116	12	28,192	20	40,749	22	31,900	23	49,660
	안전취약계층 안전	10	889	11	936	4	751	4	771	4	794
	해외재난관리	2	164	2	177	1	155	1	140	1	140
	교부세및기타	3	19,010	3	21,226	7	20,940	0	0	0	0
	안전문화및교육·훈련·홍보	10	249	12	326	12	260	0	0	0	0
합계		451	219,160	436	236,275	436	250,884	430	238,422	437	256,097

주: 재난유형 중 화재, 미세먼지, 시설 재난·사고, 국가핵심기반사고, 농어업사고, 안전취약계층지원 등 명칭이 변경된 유형의 경우 2026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활동단계별로 살펴보면, 예방 단계가 전체 사업 수와 예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방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대비·대응 및 복구 예산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방 단계는 사업 수가 2024년 274개, 2025년 270개, 2026년 276개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예산액은 17조 2,277억원에서 17조 1,835억원, 16조 5,83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예방사업은 전체 사업의 약 63%, 전체 재난안전예산의 약 65%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투입 규모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비·대응 단계는 사업 수가 131개에서 129개, 128개로 지속 감소한 반면, 예산은 2025년 2조 1,330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26년 2조 6,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복구 단계는 사업 수가 2024~2025년 31개에서 2026년 33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2025년 4조 5,25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6년 6조 4,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여 활동단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복구 단계는 2026년 기준으로 사업 수가 33개로 전체 사업의 7.6% 수준이나 예산은 6.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사업당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인다.

[최근 3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예방	274	172,277	270	171,835	276	165,831
대비·대응	131	23,856	129	21,330	128	26,215
복구	31	54,751	31	45,257	33	64,051
합계	436	250,884	430	238,422	437	256,097

주: 활동단계별 예산은 제출 자료 미흡으로 2024~2026년까지만 집계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2027년도 사업 및 예산안 현황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정부제출 예산안은 총 27개 부처, 431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규모는 24조 7,897억원이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25조 6,097억원 대비 8,200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 감액된 수준이다.[21]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부처요구안은 25조 5,76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331억원 감소한 수준이고, 기획예산처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는 부처요구안보다 7,869억원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개, 억원, %)

구분	부처 수	사업 수[1)]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재난안전사업	27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주: 1) 사업 수는 2026년 종료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과목구조 개편으로 증가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었으나 사업 수는 반영되지 아니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1) 부처별 예산안

부처별 정부예산안 규모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4조 8,216억원으로 가장 크고, 농림축산식품부 3조 7,26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3조 6,979억원, 행정안전부 3조 5,0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부처의 정부예산안 합계는 약 15조 7,492억원으로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약 63.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기획예산처로 2026년 본예산 1조 6,041억원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1조 9,043억원으로 3,002억원(18.7%)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140억원(3.2%) 증가하였으며, 질병관리청 803억원(9.8%), 경찰청 505억원(14.1%), 해양경찰청 501억원(7.5%) 등이 증액되었다. 증감률 기준으로는 국가유산청이 23.5%로 가장 높았고, 기상청 20.2%, 기획예산처

21) 2027년도 예산안은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가 2,897억원 감액되었고, 2025년에 비해 2026년에 재난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2027년도 재난복구 관련 예산안이 1조 738억원 감액되었다.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18.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2026년 4조 4,340억원에서 2027년 3조 5,037억원으로 감소한 규모는 9,304억원(△21.0%)이다. 산림청도 1,923억원(△19.3%), 국토교통부 1,411억원(△2.8%), 기후에너지환경부 1,401억원(△3.6%)이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국무조정실이 54.9%로 가장 높으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규모가 큰 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24.1%), 행정안전부(△21.0%), 산림청(△19.3%)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경찰청은 부처요구안 3,487억원에서 정부예산안 4,08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기획예산처도 1조 6,043억원에서 1조 9,04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요구안 4조 118억원, 정부예산안 3조 7,260억원으로, 산림청은 1조 911억원에서 8,054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부처요구액 대비 정부제출예산안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명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경찰청	10	3,581	3,487	4,087	505	14.1
고용노동부	9	15,462	15,151	14,882	△580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1,009	1,386	1,075	66	6.5
교육부	2	2,106	2,388	2,370	264	12.5
국가유산청	3	614	669	758	144	23.5
국무조정실	2	54	34	24	△30	△54.9
국방부	1	317	358	358	41	13.0
국토교통부	35	49,627	43,832	48,216	△1,411	△2.8
기상청	23	1,411	1,637	1,696	285	20.2
기획예산처	2	16,041	16,043	19,043	3,002	18.7
기후에너지환경부	69	38,380	38,124	36,979	△1,401	△3.6
농림축산식품부	24	36,120	40,118	37,260	1,140	3.2
농촌진흥청	2	79	289	93	14	18.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83	59	77	△6	△7.3
법무부[1)]	2	412	470	411	△1	△0.2
보건복지부	15	5,261	4,356	3,995	△1,265	△24.1

(단위: 개, 억원, %)

부처명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산림청	8	9,977	10,911	8,054	△1,923	△19.3
산업통상부	4	121	157	139	18	15.0
성평등가족부	7	1,290	1,252	1,215	△75	△5.8
소방청	28	2,233	2,401	2,325	92	4.1
식품의약품안전처	33	2,002	3,726	2,374	372	18.6
외교부	2	158	169	168	10	6.0
원자력안전위원회	7	1,429	1,633	1,485	56	3.9
질병관리청	23	8,212	9,225	9,015	803	9.8
해양경찰청	22	6,723	8,183	7,224	501	7.5
해양수산부	39	9,055	11,416	9,536	480	5.3
행정안전부	49	44,340	38,292	35,037	△9,304	△21.0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주: 1) 2027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되는 39억원을 포함하였음.
1. '부처요구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요구안을, '정부예산안'은 기획예산처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최종 정부예산안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 재난 분야 · 유형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예산안을 재난 분야·유형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86개 사업, 9조 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36.6%를 차지하여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공통 분야가 101개 사업에 7조 1,083억원(28.7%), 자연재난 분야가 58개 사업에 5조 9,189억원(23.9%), 안전사고 분야가 86개 사업에 2조 6,771억원(10.8%)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안전사고 분야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반면 공통 분야는 12.3% 감소하였다.

먼저 자연재난 분야의 세부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가 4조 1,776억원으로 자연재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고, 산사태도 21.1% 감소하였다. 반면 가뭄은 11.5%, 지진은 31.3%, 조류는 69.0% 증가하였다.

사회재난 분야에서는 철도교통 재난·사고가 2조 8,220억원, 도로교통 재난·사고가 2조 203억원으로 교통 분야의 비중이 크다. 증가율은 시설 재난·사고가 129.2%로 가장 높았고, 해양오염 40.2%, 수질오염 17.3%, 화재 14.7%,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14.4% 등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기오염은 19.6%, 도로교통 재난·

사고는 10.2%, 산불은 9.7% 감소하였다.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생활제품사고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2,910억원으로 2,410억원 증가하여 482.3%의 큰 증가율을 보였고, 범죄 17.3%, 식품사고 14.3%, 의료제품사고 25.8% 증가하였다. 반면 사업장 산재는 3.6%, 승강기사고는 3.8% 감소하였다.

공통 분야에서는 재난구호 및 복구 유형이 4조 2,740억원으로 6,920억원(13.9%) 감소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도 1,733억원(7.0%),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는 1,274억원(21.7%) 감소하였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재난유형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분야	유형	사업수	'26년 본예산 (A)	'27년 부처요구안 (B)	'27년 정부예산안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자연재난	풍수해	43	44,829	43,814	41,776	△3,053	△6.8
	산사태	2	3,509	2,884	2,770	△739	△21.1
	가뭄	7	11,913	12,818	13,284	1,370	11.5
	지진	5	684	834	899	214	31.3
	조류	1	272	345	460	188	69.0
	소계	58	61,207	60,695	59,189	△2,020	△3.3
사회재난	화재	6	655	691	752	96	14.7
	산불	4	3,947	6,142	3,563	△384	△9.7
	시설 재난·사고	7	303	405	695	392	129.2
	방사능재난·사고	9	1,535	1,746	1,597	62	4.0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7	512	558	470	△42	△8.2
	대기오염	11	3,837	3,486	3,087	△750	△19.6
	수질오염	27	5,565	5,633	6,525	961	17.3
	토양오염	2	122	132	122	-	-
	해양오염	9	1,254	1,933	1,759	505	40.2
	감염병	19	8,033	9,062	8,857	824	10.3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9	3,658	4,656	4,185	527	14.4
	도로교통재난·사고	8	22,510	23,836	20,203	△2,307	△10.2
	철도교통재난·사고	11	27,718	20,431	28,220	502	1.8
	항공교통재난·사고	14	834	986	944	110	13.2
	선박재난·사고	26	7,216	8,437	7,445	229	3.2
	국가핵심기반 마비	5	748	1,115	771	23	3.0
	전시재난·테러	12	1,521	1,682	1,662	141	9.3
	소계	186	89,968	90,931	90,857	889	1.0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1	63	62	61	△2	△3.8
	전기·가스사고	6	1,223	1,398	1,251	27	2.2

(단위: 개, 억원, %)

분야	유형	사업수	'26년 본예산 (A)	'27년 부처요구안 (B)	'27년 정부예산안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등산·레저 사고	1	11	12	12	1	7.3
	생활제품사고	6	500	1,362	2,910	2,410	482.3
	사업장 산재	11	15,509	15,215	14,943	△566	△3.6
	농·수산업 사고	3	295	693	324	29	9.9
	식품사고	29	2,405	4,002	2,748	343	14.3
	의료제품사고	9	299	476	377	77	25.8
	범죄	20	3,535	3,625	4,145	611	17.3
	소계	86	23,840	26,845	26,771	2,930	12.3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40	24,625	25,591	22,892	△1,733	△7.0
	구조,구급및응급의료	33	5,862	4,886	4,588	△1,274	△21.7
	재난구호및복구	23	49,660	45,789	42,740	△6,920	△13.9
	안전취약계층 안전	4	794	877	712	△82	△10.3
	해외재난관리	1	140	150	151	11	7.6
	소계	101	81,081	77,293	71,083	△9,998	△12.3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3) 회계·기금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다수의 특별회계·기금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248개 사업, 11조 1,301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2026년 본예산 11조 6,808억원에서 5,507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4.7% 감액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39개 사업, 4조 1,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개 사업, 2조 6,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1개 사업, 2조 2,455억원으로 2026년보다 2,563억원, 10.2% 감소하였다.

기금 중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8개 사업, 1조 4,47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9개 사업, 7,981억원으로 7.5% 증가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은 12개 사업, 2,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감소하였다. 이 밖에 원자력기금 1,428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172억원,

축산발전기금 942억원 등이 재난안전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감규모를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2026년 9,064억원에서 2027년 1조 2,426억원으로 3,362억원 증가하여 37.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유산보호기금도 23.5%, 수산발전기금은 21.8% 증가하였다. 반면 응급의료기금은 1,277억원 감소하여 36.8%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259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563억원 각각 감소하였다. 일반회계의 감소액은 5,507억원으로 회계·기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회계기금명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3	4	4	1	19.4
교통시설특별회계	21	25,018	26,201	22,455	△2,563	△10.2
국가유산보호기금	3	614	669	758	144	23.5
국민건강증진기금	9	7,424	8,375	7,981	557	7.5
금강수계관리기금	3	82	77	76	△6	△7.8
기후대응기금	2	18	24	16	△1	△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196	196	194	△2	△1.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500	1,276	500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	41,660	46,811	41,745	84	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99	106	105	6	5.9
방송통신발전기금	2	44	37	38	△6	△13.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404	360	391	△13	△3.3
복권기금	1	41	43	43	2	4.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14,900	14,807	14,475	△425	△2.9
수산발전기금	2	549	852	668	120	21.8
양성평등기금	3	760	739	677	△83	△10.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	85	83	82	△3	△3.4
원자력기금	6	1,374	1,567	1,428	55	4.0
응급의료기금	12	3,470	2,287	2,193	△1,277	△36.8
일반회계	248	116,808	110,084	111,301	△5,507	△4.7
자원안보기금	2	70	87	70	-	-
전력산업기반기금	3	1,230	1,293	1,172	△58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28,786	26,956	26,527	△2,259	△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계정)	1	12	35	35	23	19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계정)	1	749	365	390	△359	△48.0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	990	940	882	△108	△10.9
청소년육성기금	1	51	51	59	8	15.2
축산발전기금	3	914	939	942	28	3.1

(단위: 개, 억원, %)

회계기금명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한강수계관리기금	4	163	123	121	△42	△2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	14	158	145	131	964.6
환경개선특별회계	29	9,064	10,221	12,426	3,362	37.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4) 활동단계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제출 예산안을 활동단계별로 살펴보면, 예방 분야가 273개 사업, 16조 2,14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복구 분야가 33개 사업, 6조 801억원, 대비·대응 분야가 125개 사업, 2조 4,94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중 예방 분야의 비중은 약 65.4%, 복구 분야는 약 24.5%, 대비·대응 분야는 약 10.1%로, 재난안전사업의 재정투자 비중이 사후 복구나 현장 대응보다 예방 단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431개 사업 중 예방 분야가 273개로 약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비·대응 분야는 125개, 복구 분야는 33개이다. 복구 분야는 전체 사업 수의 약 7.7%에 불과하지만 정부예산안 기준 예산액은 전체의 약 24.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당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모든 활동단계에서 2027년 예산안이 감소하였다. 대비·대응 분야는 2026년 2조 6,215억원에서 2027년 2조 4,949억원으로 1,266억원(4.8%) 감소하였고, 복구 분야는 6조 4,051억원에서 6조 801억원으로 3,250억원(5.1%) 감소하였다. 예방 분야도 16조 5,831억원에서 16조 2,147억원으로 3,684억원(2.2%) 감소하였다.

또한 부처요구안과 정부제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모든 활동단계에서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 대비 감액되었다. 예방 분야의 경우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16조 4,030억원이었는데 정부예산안에서는 16조 2,147억원으로 조정되어 부처요구안보다 1,883억원 감액되었다. 대비·대응 분야는 부처요구안 2조 8,515억원에서 정부예산안 2조 4,949억원으로 3,566억원 감액되었으며, 복구 분야도 부처요구안 6조 3,221억원에서 정부예산안 6조 801억원으로 2,420억원 감액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방	273	165,831	164,030	162,147	△3,684	△2.2
대비·대응	125	26,215	28,515	24,949	△1,266	△4.8
복구	33	64,051	63,221	60,801	△3,250	△5.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5) 2027년 신규 편입 예정 사업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총 20개 사업, 5,895억원 규모의 사업의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목록 신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편입 예정 사업들[22]은 주로 정보시스템 구축, 수질오염 관리, 자살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개로 사업 수가 가장 많고, 법무부 6개, 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소방청이 각각 1개씩이다. 예산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사업이 2,590억원으로 가장 크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개선 관련 9개 사업이 총 1,571억원이다.

[2027년 예산안 재난안전사업 신규 편입 예정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2026년 기준)	2027년 예산안
교육부	대학생마음건강지원	2,000
국무조정실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운영	2,076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상류)수질개선대책사업	14,516
	낙동강(하류)수질개선대책사업	22,874
	대청호수질개선대책사업	15,081
	대청호수질개선지원	9,860

22) 현재 재난안전사업 신규 편입 예정 사업의 사업 수(20개) 및 예산액(5,895억원)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업 수(431개) 및 예산액(24조 7,897억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재난안전사업 목록에 이들 사업의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2026년 기준)	2027년 예산안
	도암호등비점오염원관리지역흙탕물저감사업	39,079
	도암호수질개선대책사업	28,000
	소양호오염원집중관리사업	11,759
	영산강섬진강오염원집중관리사업	12,607
	퇴적물준설사업	3,282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14,191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30,609
	실질적인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5,746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1,744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13,255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3,277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	94,679
소방청	자동확산소화기설치지원	5,941
행정안전부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258,962
합계		589,538

자료: 행정안전부

Ⅲ 주요 쟁점 분석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류체계 분석

가. 활동단계 분류기준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에서 활동단계별로 '대비'와 '대응' 단계를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는 활동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와도 정합하지 않고, 각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각 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재난안전사업의 활동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3]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은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7장 '재난의 복구'로 재난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재난관리 활동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단계에서는 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요인 관리·안전점검 등을, 대비단계에서는 재난관리자원,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응단계에서는 위기경보,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자원동원 및 대피·긴급구조 등을, 복구단계에서는 재난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시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활동단계]

활동단계	장(章)	조문번호	주요 내용
예방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4 등	재난발생 사전 방지, 예측체계, 안전관리체계, 재난방지시설 점검·관리 등
대비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제35조	재난관리자원, 긴급통신수단, 재난대응 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	제6장 재난의 대응	제36조~제57조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위기경보, 동원, 대피, 위험구역 설정, 긴급구조 등
복구	제7장 재난의 복구	제58조~제66조의3	피해조사, 재난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복구비·피해주민 지원 등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재난안전사업 법령상 각 활동단계는 사전 위험요인의 제거, 대응자원 및 매뉴얼의 확보,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피해조사 및 복구 등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즉 통상적으로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는 기능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활동단계별 현황을 보면, 대비와 대응이 하나로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3개로 분류되고 있어 예산 분류체계가 법령상 활동단계 구분과 정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방	273	165,831	164,030	162,147	△3,684	△2.2
대비·대응	125	26,215	28,515	24,949	△1,266	△4.8
복구	33	64,051	63,221	60,801	△3,250	△5.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복수의 단계를 통합하여 분류할 경우 각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비는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자원과 매뉴얼을 준비하는 사전적 성격의 활동인 반면, 대응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응급조치와 긴급구

조를 수행하는 사후적 성격의 활동으로 그 소요의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두 단계가 125개 사업, 2조 4,949억원으로 통합집계됨에 따라, 대비와 대응 중 어느 단계에 재원이 과소 배분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통합 분류는 단계별 평가와 성과관리를 왜곡할 수 있다. 활동단계별로 추구하는 성과목표가 대비는 대응자원의 확보·훈련, 대응은 현장 조치의 신속성 확보 등으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비와 대응이 하나로 묶임에 따라 각 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재난안전사업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되어 일부 세부사업은 재난 '대비'와 '대응'에 해당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대비와 대응 기능이 복합적으로 수행되어 이를 별도의 활동단계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이 대비와 대응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비와 대응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난안전사업이 세부사업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예산까지는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인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재난안전사업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활동단계별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성격이 재난안전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외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부터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 단위의 상향이 오히려 활동단계 간 구분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사업의 활동단계 분류가 법령 체계와 정합하고 단계별 재원배분과 성과평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비와 대응이 혼재된 세부사업은 내역사업별로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두 활동단계를 별도 집계할 필요가 있다.

나. 재난유형별 분류 세분화 필요

최근 폭염의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중점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에 폭염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폭염 활동이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다른 재난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바, 재난유형별 적정한 재원배분과 사후평가를 위해 재난유형 분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폭염은 재난안전사업 분류상 자연재난 분야 9개 유형 중 하나로서, 폭염 대응 사업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을 폭염 일수에 산입하는데, 구평년('81~'10) 기간 동안 폭염일수는 9.5일, 평년('91~'20)은 11일로 연대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21~'25) 폭염일수는 2021년 11.8일에서 2024년 30.1일, 2025년 29.7일로 각각 증가하였다.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열대야 일수 역시 2021년 5.5일에서 2024년 24.5일(역대 1위), 2025년 16.4일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

(단위: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폭염 일수	11.8	10.6	14.2	30.1	29.7
열대야 일수	5.5	13.2	8.2	24.5	16.4

자료: 기상청

질병관리청[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약 2,784명이 발생했으며, 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온열질환자	1,376	1,564	2,818	3,704	4,460	13,922	2,784

자료: 질병관리청, 「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2025)

24) 이 자료의 온열질환자 수는 질병관리청이 공표한 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른 것으로, 이 통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이므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나 재해연보 통계와 다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에 대하여 매년 작성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유형은 폭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2명이며, 이 중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295명이었다. 특히 폭염 인명피해는 2020년 29명, 2021년 39명, 2022년 34명에서 2023년 85명, 2024년 108명으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25명으로 폭염 다음으로 많았으며, 2023년에는 53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태풍은 13명, 대설은 7명, 한파는 2명으로 집계되어 폭염과 호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다. 최근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폭염의 비중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폭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2024년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호우	44	3	19	53	6	125
태풍	2	-	11	-	-	13
대설	-	-	-	-	7	7
폭염	29	39	34	85	108	295
한파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2	-	2
합계	75	42	64	140	121	442

주: 1. 인명피해 : 사망자 + 실종자
2.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함
3. 호우,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근거로 함
4. 2025년도 현황은 2026년 12월에 발간예정인 「2025 재해연보」에서 공개됨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별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사전 협의 시 수립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에서 자연재난은 폭염, 풍수해, 조류 순(順), 사회재난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화재 순, 안전사고는 범죄, 사업장산재 순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전망과 최근 언론 이슈 등을 종합하여 2027년도에 중점투자가 필요한 20대 재난유형을 선정하였다.

[2027년 재난안전예산 20대 중점투자 유형]

(단위: 개)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	중점투자 재난유형
자연재난	5	①풍수해 ②산사태 ③가뭄 ④지진 ⑤폭염
사회재난	9	①화재 ②산불 ③시설 재난·사고 ④감염병 ⑤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⑥도로교통 재난·사고 ⑦항공교통 재난·사고 ⑧선박 재난·사고 ⑨국가핵심기반 마비
안전사고	3	①식품 사고 ②범죄 ③사업장 산재
공통	3	①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②안전취약계층 안전 ③재난안전관리체계

주: 재난유형 내 순서는 중요도와 무관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일부 기초지자체는 폭염 재난 대응기준이 없고, 광역 지자체별 폭염 재난 대응기준이 상이한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다.[25] 또한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신체적 취약계층 인명피해[26]는 가중되며, 야외근무자·농업인 등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 쉼터의 경우 수요가 많은 열대야 발생 시간대 등(야간·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 양극화[27]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으로 ① 범정부 총력 대응을 통한 폭염관리체계 개선, ②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③ 폭염 저감시설 등 인프라 강화, ④ 폭염 대비 국민홍보 실시를 선정하였다.

25) 예를 들어, 충남은 관내 70% 이상, 강원은 24% 이상 시·군에서 폭염특보 발령시 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미발령 지역의 역할·임무 구분 등 표준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

26) 2025년 기준으로 온열질환자는 50~60대가 38.1%, 사망자는 70대 이상이 58.6%를 차지하여 주 고령층에서 발생하였다.

27)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에도 불구, 단가가 낮아 실질적인 냉방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2027년도 폭염 대응 중점투자방향]

구분	주요내용
폭염 관리체계 개선	• 폭염 대책기간 확대 • 중점 관리지역 대응강화 등 현장 중심의 범정부 총력대응
취약계층 집중관리	• 폭염 민감대상 세분화 •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로 인명피해 최소화
인프라 강화	• 폭염 저감시설 인프라 확대 및 정보 현행화를 통한 이용 편의 제고 • 농·축산·양식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및 지원 •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력·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
폭염대비 국민홍보	• 콘텐츠 제작·보급, 국민참여 캠페인 실시 등 홍보기능 강화 •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최근 폭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대응 사업에 대한 중점투자 필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자연재난 예산안을 보면 폭염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조류에 대응한 사업은 예산안이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자연재난 유형인 황사, 한파, 폭염, 낙뢰등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자연재난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풍수해	43	44,829	43,814	41,776	△3,053	△6.8
산사태	2	3,509	2,884	2,770	△739	△21.1
가뭄	7	11,913	12,818	13,284	1,370	11.5
지진	5	684	834	899	214	31.3
조류	1	272	345	460	188	69
합계	58	61,207	60,695	59,189	△2,020	△3.3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재난안전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이들 재난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의 사업에 폭염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례로, 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부터 2027년 예산안을 보면, 2022년 및 2023년에는 기후변화역량대응 사업이 재난유형상 폭염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손상예방관리 사업 내에 기후위기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등 내역사업에서 폭염 대응 활동이 이루어졌고, 재난유형도 폭염이 아닌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로 분류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사업과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사업에 폭염 대응 활동이 포함되었고, 재난안전사업상 재난유형(안)은 각각 감염병과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이다.

[연도별 폭염 관련 사업 현황(질병청 소관)]

(단위: 백만원)

연도	재난유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1)]
2022	폭염	기후변화역량대응 (극한기온-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85
2023	폭염	기후변화역량대응 (극한기온-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85
2024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손상예방관리 (기후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354
2025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손상예방관리 (기후위기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365
2026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손상예방관리 (기후위기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765
2027(안)	감염병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권역별 맞춤형 질병대응 협력체계 강화)	110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구축)	548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이상기후 대비·대응 강화)	410

주: 1) 예산액은 세부사업 전체의 예산액이 아니라 폭염 관련 사업의 예산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서 폭염 대응 활동을 포함한 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질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내역사업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시기 건강관리 교육, 온열질환 취약 노인 대상 디지털 기반 조기 위험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감염성 건강위해대비·대응 세부사업에서는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온열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폭염피해 심층 감시, 온열질환 발생 예측 등을 실시하고, 신설된 내역사업인 이상기후 대비·대응 강화 사업을 통해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강화 및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폭염 피해 심층감시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 폭염 대응 사업(질병청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폭염 대응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권역별 맞춤형 질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 폭염·한파 취약시기 건강관리 교육 - 온열질환 취약 노인 대상 디지털 기반 조기 위험 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	-	110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 온열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 폭염피해 심층 감시 - 온열질환 발생 예측 등	765	548
	•이상기후 대비·대응 강화 -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강화 및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 폭염 피해 심층감시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등	-	410

주: 예산액은 세부사업 전체의 예산액이 아니라 폭염 관련 사업의 예산액임
자료: 질병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세부사업 단위로 정해지는 재난안전사업의 재난유형은 폭염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역사업 또는 그 이하 사업 단위에서 폭염 대응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존재한다.[28] 폭염 대응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난유형 분류상 폭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한 세부사업 내에 폭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과 관련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재난유형별 예산안 현황만으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점

28) 특히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손상예방관리 사업에서 분리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온열질환 대응 등 폭염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재난유형(안)은 기존 사업의 유형인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로 분류되어 있다.

투자방향에 따라 폭염 관련 재원이 실제로 정부예산안에서 적정하게 확대·배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중점투자방향과 예산편성 간 연계성에 대한 점검이 제약될 수 있다. 나아가 폭염 대응사업의 실적 및 성과가 감염병,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등 다른 유형의 성과로 집계될 경우, 재난유형별 재정투입과 정책성과를 비교하는 사후평가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업의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의 현행 분류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세부사업에 폭염·한파·감염병 등 복수의 재난 대응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부사업 전체에 하나의 대표 재난유형만 부여하기보다는, 내역사업별로 관련 재난유형과 해당 예산액을 추가로 관리하는 보조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는 재난안전사업을 내역사업 단위까지 포함시켜 세분화하다가 2024년 예산안부터 세부사업 단위로 상향조정하였는데,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했던 2023년 이전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2023년의 경우 전체 재난안전사업 436개(연구개발사업 포함) 중 세부사업 단위인 경우가 384개였고, 내역사업인 경우가 52개였다. 2024년부터는 내역사업 단위는 1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세부사업·내역사업 분류 현황]

(단위: 개)

연도	재난안전사업 전체 사업수 (a+b)	세부사업 단위 사업수 (a)	내역사업 단위 사업수 (b)
2021	472(401)	340(305)	132(96)
2022	451(395)	346(312)	105(83)
2023	436(392)	384(353)	52(39)
2024	436	435	1
2025	430	429	1
2026	437	436	1

주: 2021~2023의 경우 괄호 내 사업 수는 R&D 사업을 제외한 사업 수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질병관리청 소관 기후변화역량대응 사업의 경우 2022년 및 2023년 예산을 보면,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재난유형을 폭염, 대설·한파, 미세먼지 등 각각 다른 재난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한 바 있다.

[기후변화역량대응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질병청 소관)]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재난유형	내역사업명	예산액
2022	기후변화역량대응	폭염	극한기온-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85
		대설·한파	극한기온-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50
		미세먼지	미세먼지관련 건강영향감시 및 질병 예방	150
2023	기후변화역량대응	폭염	극한기온-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85
		대설·한파	극한기온-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50

자료: 행정안전부

이상의 논의는 질병관리청 소관의 폭염 유형에 국한하여 살펴본 것이므로, 다른 부처 소관 사업과 황사·한파·폭염·낙뢰등기타 등 다른 재난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면 재난유형 분류가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기보다는 폭염 대응 사업의 사례와 같이 복수의 재난유형이 혼재하거나 중점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재난유형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세부사업별로 주된 재난유형과 부수적 재난유형을 함께 표시하고, 재난유형별 예산액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협의 단계에서 제시한 중점투자방향이 정부 예산안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재난유형별 재정투입과 사업성과를 연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연구개발사업의 재난안전사업 내 편입 필요

재난안전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되어 재난안전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개발 간 연계 및 환류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에 재편입하여 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결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중복평가를 방지하는 동시에 재난안전정책과 연구개발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안전사업의 평가 대상에 연구개발(R&D)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29]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가 제출

2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한 차년도 예산안 요구서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4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제외시켰다.

재난안전사업의 범위에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정책의 특성과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의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 이전인 2022년에는 14개 부처 56개 사업, 4,934억원, 2023년에는 12개 부처 44개 사업, 3,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류·관리된 바 있다.

[2022~2023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부처 수	사업 수	예산	부처 수	사업 수	예산
연구개발(R&D) 사업	14	56	4,934	12	44	3,800
비 연구개발(R&D) 사업	29	395	214,226	28	392	232,475
합계	29	451	219,160	28	436	236,275

주: 부처 수의 합계는 중복을 제거한 순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각 호 생략)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2022년 및 2023년도에 재난안전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예산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2년에는 10개 부처, 18개 사업에 예산액 합계는 3,612억원이고, 2023년에는 8개 부처 13개 사업, 2,880억원 규모이다. 2022년도의 경우 부처별 사업 수와 예산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사업에 97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사업에 552억원, 행정안전부 3개 사업에 474억원 등이다. 2023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사업 86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사업 46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개 사업 386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규모가 크다.

사업별로 예산액 규모 순 상위 3개 사업은 2022년의 경우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417억원,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384억원, 식품등안전관리 323억원이었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386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347억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317억원 순이다.

[2022~2023년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100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도	주관기관	유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핵심기반 사고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R&D,정보화) (ICT인프라·서비스보호강화)	41,688
		사업장산재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13,522
	기상청	풍수해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관측기술지원및활용연구)	11,65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8,415
	농촌진흥청	풍수해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23,625
	산업통상자원부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원전안전및선진화,원자력환경및해체기술개발)	31,2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사고	식품등안전관리(R&D)	32,260
		의료제품 사고	의약품등안전관리(R&D)	23,171
		식품사고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R&D)	18,317
		식품사고	농축수산안전관리(R&D)	11,828
		의료제품 사고	의료기기등안전관리(R&D)	11,50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재난·사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R&D)	15,653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10,264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20,28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9,073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6,888

(단위: 백만원)

연도	주관기관	유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재난안전관리체계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R&D)	11,400
	환경부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미세먼지연구)	10,496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핵심기반사고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R&D,정보화) (ICT인프라·서비스보호강화)	34,740
		사업장산재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11,824
	기상청	풍수해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31,73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8,632
	농촌진흥청	풍수해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24,4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사고	식품등안전관리(R&D)	29,966
		의료제품사고	의약품등안전관리(R&D)	23,232
		식품사고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R&D)	18,961
		식품사고	농축수산안전관리(R&D)	14,08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재난·사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R&D)	14,22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9,250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6,468
	환경부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미세먼지연구)	10,51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 분야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요인을 탐지·제거하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이 특히 중요하다. 즉 연구개발은 재난안전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의 표에서와 같이 실제로 2022~2023년 재난안전사업에 속한 연구개발사업 중에는 기상관측, 감염병 관리, 원자력 안전, 정보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재난유형의 예방·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재난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 내 재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30],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 행정안전부(사회재난정책국)는 2024년 4월에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재난안전사업으로 재편입하여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에서 일괄 제외할 경우, 재난안전예산의 중점투자방향 설정→사전협의→사업평가→차년도 투자방향 반영으로 이어지는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에서 기술개발 사업(연구개발사업)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사업 평가나 재난원인 분석 과정에서 기존 정책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신규 연구개발 수요로 연계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의 투자 우선순위를 높이는 환류가 제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32]

다만, '1사업 1평가' 기준과 피평가부처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2) 행정안전부가 연구개발사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재난안전사업 프로세스에 환류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을 편입하여 재난안전사업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난안전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를 활용하면 되므로, 부처 부담을 이유로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재난안전사업으로 재편입하여 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결과를 공유받아 해당 사업의 중점투자방향 수립,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중복평가를 방지하는 동시에 재난안전정책과 연구개발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정책수요가 연구개발로 연결되고, 다시 연구개발 성과가 예방·대비·대응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목록의 조속한 확정 필요

과목구조 개편으로 분리·이관된 49개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 수는 제외되어 있어 사업 수와 예산액 간 정합성이 저하되어 예산안 심사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심사기간 중 사업목록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을 실시하는 각 주관부처는 2026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중점투자방향 및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안전사업의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한 부처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고, 기획예산처는 부처요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목구조개편을 실시하였다.

과목구조를 개편한 49개 사업을 살펴보면, 각 부처가 사업분리 등을 반영하여 제출한 부처요구안에서 25개 사업을 구조개편하였고,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에서 추가로 과목구조를 개편한 사업이 24개이다. 2027년도 예산안 규모로 보면, 부처요구안에서 개편된 사업 규모가 3,456억원, 기획예산처가 추가로 개편한 사업의 규모가 약 7,010억원으로 합계액은 1조 466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과목구조 개편 사업(단계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 수	2027년 부처요구안	2027년 정부예산안
과목구조 개편(각 부처)	25	990,323	345,624
과목구조 개편(기획예산처)	24	-	700,951
합계	49	990,323	1,046,575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별로 보면, 13개 부처에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예산액은 국토교통부가 3,239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농림축산식품부 2,509억원, 고용노동부 1,313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292억원 순이다.

[2027년도 예산안 과목구조 개편 사업(부처별)]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사업 수	2027년 부처요구안	2027년 정부예산안
경찰청	6	116	10,742
고용노동부	2	147,240	131,348
국토교통부	5	190,193	323,903
기상청	2	1,185	2,019
기후에너지환경부	3	109,025	129,200
농림축산식품부	1	-	250,904
법무부	1	8,813	3,887
산림청	1	-	1,523
식품의약품안전처	6	-	16,834
질병관리청	3	17,182	17,598
해양경찰청	3	17,232	16,193
해양수산부	9	91,853	96,669
행정안전부	7	407,484	45,755
합계	49	990,323	1,046,575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과목구조를 개편한 이들 49개의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수는 제외되어 있어서 예산액과 사업 수가 정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49개 사업의 예산안 합계 1조 466억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24조 7,897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수 431개에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예산안 총규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수에는 제외되어 있는 49개 사업 가운데 예산안 규모가 큰 주요 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 재난안전사업인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서 고속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사업과 역시설개량 사업이 각각 분리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서 양수장시설개선 사업이 분리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존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사업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자율) 사업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제주) 사업이 각각 분리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과목구조 개편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정부예산안	과목구조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	고속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246,901	기존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서 분리됨
	역시설개량	59,291	
농림축산식품부	양수장시설개선	250,904	기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서 분리됨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자율)	39,187	기존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사업'에서 분리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제주)	3,750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과목구조가 개편된 사업의 예산액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난안전사업 목록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사업 수와 예산액 간 정합성이 저하되고, 재난안전사업 편입 여부도 불분명하여 국회가 재난안전사업의 구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데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분리·이관된 사업들의 예산액은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목록의 변경사항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사업별 재난안전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예산액은 이미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후로 사업목록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 목록을 정부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26년도의 경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실시되면서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과목구조를 개편하는 등 과목구조 개편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간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인 8월말까지 사업목록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 내에 과목구조 개편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록을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 수와 예산액의 정합성을 확보한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의 과목구조 개편 결과가 신속하게 재난안전사업 분류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차후에는 구조개편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업 편입 절차를 정부예산안 제출 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 분석

가.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정부 제출 예산안은 총 24조 7,8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투자등급 가운데 확대(핵심사업) 등급 사업은 전년 대비 12.6%, 확대 등급 사업은 7.1% 증가한 반면, 유지 등급 사업은 4.6%, 축소 등급 사업은 20.8% 감소하여 등급별 투자방향이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확대(핵심사업) 등급 사업의 예산 증감률은 부처요구안 19.8%에서 정부안 12.6%로 7.2%p 축소되었으며, 투자확대 등급 사업도 19.8%에서 7.1%로 12.7%p 축소되었다. 투자유지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1.8%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4.6% 감액으로 조정되어 증감률이 6.4%p 하락하였다. 투자축소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전년 대비 28.7%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20.8% 감액으로 조정되어 감액 폭이 7.9%p 축소되었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2027년			
	본예산	부처요구안		정부안	
	(A)	(B)	(B-A)/A	(C)	(C-A)/A
투자확대(핵심사업)	35,638	42,688	19.8	40,141	12.6
투자확대	32,118	38,491	19.8	34,414	7.1
투자유지	93,978	95,663	1.8	89,701	△4.6
투자축소	55,282	39,425	△28.7	43,796	△20.8
2026년 종료 등	173	-	△100.0	-	△100.0
사전협의 대상 아님	38,908	39,499	1.5	39,846	2.4
합계	256,097	255,766	△0.1	247,897	△3.2

주: '부처요구안'은 각 부처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차년도 예산안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부처요구안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투자등급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가 심사·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제출 예산안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획예산처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투자확대 등급(핵심사업 포함) 사업의 증액 폭을 축소하는 한편, 투자축소 사업의 감액 폭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확대 등급과 투자축소 등급 간 예산 증감률의 격차는 부처요구안 48.5%p에서 정부안 30.8%p로 17.7%p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 투자등급에 따른 예산 증감률의 차별성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비교]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2027년			
	본예산 (A)	부처요구안 (B)	(B-A)/A	정부안 (C)	(C-A)/A
투자확대 합계 (핵심사업+투자확대)(a)	67,756	81,179	19.8	74,555	10.0
투자축소(b)	55,282	39,425	△28.7	43,796	△20.8
증감률 차이(a-b)	-	-	48.5	-	30.8

주: 투자유지 사업은 제외하고 비교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1) 부처별 분석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부처 총량 수준에서는 확대(핵심사업)·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 유지·축소 분야는 감액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확대 분야의 증액 폭은 축소된 반면 유지·축소 분야의 감액 폭은 완화되었고, 일부 부처에서는 사전협의 등급과 실제 정부안의 증감 방향이 서로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사전협의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안 등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정당국의 심의과정에서 사전협의안 등급에 따라 부처요구안이 상이한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확대(핵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총 3조 5,638억원으로, 각 부처는 전년 대비 19.8%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12.6%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정부안 증가율이 부처 요구안보다 7.2%p 낮게 나타났다. 확대 등급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3조 2,118억원을 기준으로 부처 요구안은 19.8% 증가하였으나 정부안 증가율은 7.1%로 낮아졌다.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12.7%p로 확대(핵심사업) 사업보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유지 등급은 2026년도 본예산 9조 3,978억원에 대해 부처 요구안이 1.8% 증가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4.6% 감소하여,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안의 증감률이 6.4%p 하락하였다. 축소 등급은 2026년도 본예산 5조 5,282억원에 대해 부처가 28.7%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20.8%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안의 감액 폭이 7.9%p 완화되었다.

재정당국이 사전협의안 투자등급별로 예산안을 조정한 방향과 규모는 부처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확대(핵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부처요구안에서 33.3%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7.4%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해양경찰청은 157.8% 증액 요구에서 13.3% 증액으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기후부는 부처 요구안 증가율 14.8%보다 높은 18.5%가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며, 기상청 역시 29.3%에서 51.6%로 증액 폭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요구안에서는 21.7%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14.5%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핵심사업을 제외한 일반 확대 등급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부처 요구안에서 5.6% 증액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6.8% 감액으로 전환되었고, 산림청도 12.1% 증액 요구에서 17.4% 감액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기후부는 16.5% 증액 요구보다 높은 28.8% 증액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며, 국가유산청도 11.3%에서 39.9%로 증액 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사전협의 결과 축소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감액한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전년 대비 증액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경찰청의 경우 축소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8.9% 감액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오히려 32.6% 증액되었고, 국토교통부 역시 30.5% 감액 요구에서 정부안은 14.4% 증액으로 전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36.2% 감액 요구에서 정부안은 14.4% 증액으로 변경되었다.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42.9% 감액 요구보다 더 큰 74.5% 감액이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부처별 편차가 상당하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는 확대등급 사업을 증액하고 축소등급 사업을 감액한다는 사전협의의 기본 방향이 정부안에서도 나타나지만, 개별 사업·부처 수준에서는 사전협의 등급과 정부 예산안의 증감 방향과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대등급의 증액 규모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일부 축소등급 사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액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부처명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경찰청	-	-	-	618	6.6	7.3	1,760	△1.6	3.8	1,203	△8.9	32.6
고용노동부	492	33.3	7.4	2,838	24.9	2.0	810	46.9	17.2	11,321	△13.8	△7.2
과기정통부	633	43.1	-	95	88.0	31.6	282	7.2	12.8	-	-	-
교육부	-	-	-	3	29.6	19.4	-	-	-	-	-	-
국가유산청	316	7.6	11.8	190	11.3	39.9	108	8.9	29.1	-	-	-
국무조정실	-	-	-	-	-	-	-	-	-	54	△36.8	△54.9
국방부	-	-	-	317	13.0	13.0	-	-	-	-	-	-
국토교통부	3,561	21.0	7.1	8,812	5.6	△6.8	22,600	△11.3	△14.0	14,654	△30.5	14.4
기상청	485	29.3	51.6	206	7.3	△3.4	354	35.4	28.8	366	△15.5	△16.4
기획예산처	-	-	-	41	5.3	4.2	-	-	-	-	-	-
기후부	8,986	14.8	18.5	4,190	16.5	28.8	15,989	1.7	△12.1	8,287	△24.3	△22.2
농식품부	10,134	14.2	10.4	4,630	44.6	4.8	20,515	2.6	0.1	841	△4.7	△18.3
농촌진흥청	-	-	-	51	284.7	36.8	28	230.6	△15.0	-	-	-
방미통위	-	-	-	-	-	-	44	△15.0	△13.9	39	△45.2	-
법무부[1)]	373	15.9	△0.2	-	-	-	39	-	1.7	-	-	-
보건복지부	-	-	-	687	32.7	32.8	2,037	3.2	△1.1	2,536	△47.1	△57.9
산림청	323	4.3	△21.1	1,938	12.1	△17.4	5,215	32.3	△13.8	2,500	△40.0	△32.0
산업통상부	35	50.0	-	16	30.6	23.9	70	18.7	20.5	-	-	-
성평등가족부	48	△0.2	△10.6	-	-	-	838	0.8	△6.7	404	△11.0	△3.3
소방청	178	186.2	196.2	446	19.4	△0.3	713	△11.5	△2.0	894	△18.4	△26.7
식약처	181	90.0	21.6	148	113.2	39.8	1,399	106.8	16.8	275	△36.2	14.4
외교부	-	-	-	-	-	-	158	6.5	6.0	-	-	-
원안위	-	-	-	126	37.5	16.7	1,303	12.0	2.7	-	-	-
질병관리청	6,727	15.9	9.2	199	44.8	6.3	1,075	△10.8	18.7	210	△13.7	△13.4
해양경찰청	229	157.8	13.3	2,494	30.6	36.9	3,586	13.5	△7.0	413	△36.1	△48.1
해양수산부	2,891	31.2	8.3	2,000	13.8	10.3	3,966	32.9	3.9	198	△61.3	△61.3
행정안전부	46	21.7	14.5	2,073	8.4	4.4	11,089	△19.3	7.7	11,085	△42.9	△74.5
합계	35,638	19.8	12.6	32,118	19.8	7.1	93,978	1.8	△4.6	55,282	△28.7	△20.8

주: 1) 2027년도 예산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되는 39억원을 포함함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임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재난유형별 분석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재난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전협의 등급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지만, 재난유형별로는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가 크고 일부 유형은 투자등급의 방향과 정부안 증감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가 확인된다.

재난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처요구안과 정부안 간 증감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풍수해 유형의 확대(핵심사업) 사업이 부처안에서 12.8% 증액되었으나 정부안에서는 5.1% 감액되었고, 산사태 핵심사업도 4.3% 증액 요구에서 21.1% 감액으로 전환되었다. 가뭄 유형의 경우, 확대사업 역시 부처안에서는 19.5%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12.5% 감액되었다.

사회재난 분야를 살펴보면, 산불 유형의 확대 사업은 부처안에서 12.1%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17.4% 감액으로 전환되었으며, 시설 재난·사고 확대사업은 부처안 증가율 79.4%에서 정부안 296.4%로 오히려 증액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도로교통재난·사고 확대사업은 0.6% 증액 요구에서 정부안 14.1% 감액으로 바뀐 반면, 철도교통재난·사고의 축소사업은 부처안에서 31.3% 감액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안에서는 17.5% 증액되었다.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부처안과 정부안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생활제품사고 핵심사업은 부처안 증가율 358.0%에서 정부안 1,098.0%로 증액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농·수산업 사고 확대사업은 284.7%에서 36.8%로, 의료제품사고 확대사업은 130.6%에서 59.3%로 증액 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축소등급에서는 식품사고가 부처안 △31.7%에서 정부안 11.6%, 의료제품사고가 △54.1%에서 8.1%, 범죄가 △14.3%에서 49.1%로 각각 증액으로 전환되었다.

공통 분야에서 재난구호 및 복구 유형의 경우, 확대 사업은 부처안에서 60.4%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4.7% 감액으로 전환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유형의 확대(핵심사업) 사업은 부처안에서 10.7%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서는 15.5%로 증액 폭이 확대되었다.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확대 사업도 부처안 16.7% 증액에서 정부안 3.5% 감액으로 변경되었다.

정리하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전협의 투자등급과 재정당국이 편성한 정부예산안 간 연계성이 재난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난유형에 따라 사전협의 등급과 정부안의 괴리가 클 경우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재난예방·피해저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재난유형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자연재난	풍수해	11,012	12.8	△5.1	1,935	12.2	9.7	29,524	△8.0	△7.6	2,283	△9.9	△15.3
	산사태	323	4.3	△21.1	0	-	-	3,185	△20.0	△21.1	-	-	-
	가뭄	18	32.2	29.4	2,134	19.5	△12.5	9,761	4.9	16.7	-	-	-
	지진	94	△15	△14.9	-	-	-	458	56.0	70.3	47	△15.0	△17.2
	조류	272	26.8	69.0	-	-	-	-	-	-	-	-	-
사회재난	화재	316	7.6	11.8	190	11.3	39.9	144	△6.5	△11.4	5	△1.9	△1.9
	산불	-	-	-	1,938	12.1	△17.4	2,009	97.6	△2.3	-	-	-
	시설 재난·사고	-	-	-	129	79.4	296.4	174	△0.1	5.7	-	-	-
	방사능재난·사고	99	7.3	5.9	126	37.5	16.7	1,303	12.0	2.7	8	△5.3	△5.3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	-	-	168	37.0	5.1	47	53.7	△0.1	297	△14.2	△17.1
	대기오염	510	5.6	5.5	-	-	-	1,337	21.6	△24.7	1,984	△33.4	△22.3
	수질오염	-	-	-	1,949	21.5	58.6	1,739	11.6	21.6	1,116	△17.0	△19.6
	토양오염	-	-	-	-	-	-	115	8.5	0.1	7	-	-
	해양오염	-	-	-	421	74.2	96.7	833	44.0	11.7	-	-	-
	감염병	6,672	16.0	9.3	199	44.8	6.3	959	△10.2	22.8	202	△14.0	△13.7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307	48.6	27.5	1,401	56.6	29.4	1,900	3.4	2.1	51	△15.2	△15.2
	도로교통재난·사고	3,561	21.0	7.1	7,829	0.6	△14.1	10,100	7.3	△11.9	1,020	△20.0	△25.8
	철도교통재난·사고	-	-	-	769	25.0	4.7	13,335	△24.1	△14.3	13,614	△31.3	17.5
	항공교통재난·사고	64	16.4	83.6	554	27.3	15.2	164	6.0	1.0	52	△37.6	△56.5
	선박재난·사고	303	140.8	20.7	2,858	18.6	26.0	3,446	15.4	△7.5	608	△44.3	△52.5
	국가핵심기반 마비	633	43.1	-	38	168.6	80.5	78	38.1	△10.4	-	-	-
	전시재난·테러	-	-	-	18	13.9	1.0	604	39.4	35.1	900	△8.7	△7.9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	-	-	-	-	-	-	-	-	63	△1.7	△3.8
	전기·가스사고	35	50.0	-	1,127	11.7	2.7	61	41.1	△4.2	-	-	-
	등산·레저 사고	-	-	-	-	-	-	11	10.2	7.3	-	-	-
	생활제품사고	220	358.0	1,098.0	251	20.3	△0.6	29	85.5	△8.0	-	-	-
	사업장 산재	492	33.3	7.4	2,838	24.9	2.0	857	46.3	18.0	11,321	△13.8	△7.2
	농·수산업 사고	-	-	-	51	284.7	36.8	244	104.0	4.3	-	-	-
	식품사고	84	131.4	20.4	548	19.1	7.0	1,522	96.1	17.0	251	△31.7	11.6
	의료제품사고	97	54.1	22.6	75	130.6	59.3	79	65.9	8.7	48	△54.1	8.1
	범죄	421	14.1	△1.4	690	36.7	41.9	1,611	△6.6	△4.5	813	△14.3	49.1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33	10.7	15.5	1,674	6.7	4.4	531	△6.5	△11.9	235	△27.1	△8.0
	구조,구급및응급의료	233	142.9	148.4	610	16.7	△3.5	2,159	△6.4	△2.6	2,859	△44.4	△53.9

(단위: 억원, %)

구분	재난유형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재난구호및복구	9,839	13.2	9.9	1,558	60.4	△4.7	5,053	11.5	△15.9	17,210	△38.9	△58.2
	안전취약계층 안전	-	-	-	41	5.3	4.2	465	26.7	7.4	288	△15.0	△40.9
	해외재난관리	-	-	-	-	-	-	140	7.4	7.6	-	-	-
합계		35,638	19.8	12.6	32,118	19.8	7.1	93,978	1.8	△4.6	55,282	△28.7	△20.8

주: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이고,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활동단계별 분석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활동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확대등급은 증액하고 축소등급은 감액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활동단계별로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가 크고 일부는 투자등급과 반대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도 예산안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활동단계별로 비교해 보면, 예방 분야의 경우 확대(핵심사업) 등급은 부처요구안에서 전년 대비 18.0%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3.2% 증액에 그쳤고, 확대 등급 사업도 16.5%에서 6.4%로 증액 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축소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23.0%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오히려 0.8% 증액으로 전환되어 사전협의의 투자방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대비·대응 분야에서도 확대(핵심사업) 등급은 부처요구안의 36.9% 증액요구가 정부안에서는 13.5%로 낮아졌으며, 유지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13.4%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4.6% 감액으로 전환되었다.

복구 분야에서는 확대 사업이 부처요구안에서 56.1% 증액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안에서는 8.3% 감액으로 전환되었고, 유지 사업에서도 13.2% 증액 요구에서 12.5% 감액으로 전환된 반면 확대(핵심사업) 등급은 부처요구안 20.0%보다 높은 30.9%가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는 사전협의 등급별 투자방향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으

나, 활동단계별로 확대사업이 감액되거나 축소사업이 증액되는 등 사전협의 결과와 실제 예산편성 간 정합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특히 복구 분야 확대사업과 예방 분야 축소사업처럼 투자등급과 예산 증감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제도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활동단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예방	22,152	18.0	3.2	24,615	16.5	6.4	74,322	△1.3	△3.9	33,402	△23.0	0.8
대비·대응	2,168	36.9	13.5	5,566	22.2	15.9	13,784	13.4	△4.6	4,601	△32.3	△37.3
복구	11,318	20.0	30.9	1,937	56.1	△8.3	5,872	13.2	△12.5	17,280	△38.8	△58.0
합계	35,638	19.8	12.6	32,118	19.8	7.1	93,978	1.8	△4.6	55,282	△28.7	△20.8

주: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의미함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불일치 사업

(1) 투자확대 등급 중 정부안 감액 사업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의견을 제시한 사업들이 기획예산처 조정 과정을 거친 정부안에서는 부처요구안 또는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사전협의 결과와 실제 예산편성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서 2026년 본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총 28개로 파악되며, 이 중 8개는 일반 확대사업보다 정책적 우선도가 높은 확대(핵심사업)에 해당한다. 이들 28개 사업의 2026년 본예산은 총 2조 4,402억원, 부처요구안은 2조 6,670억원이었으나, 최종 정부안은 2조 1,136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66억원(13.4%), 부처요구안 대비 5,534억원(20.7%) 감소하였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국토교통부)의 전년도 예산 대비 정부안 규모는 1,104억원 감액되었으며,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337억원, 농촌용수개발(농림축산식품부) 267억원, 양식등재해대책비(해양수산부) 사업이 139억원 감액되었다. 이들 사업의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의 감액 규모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1,151억원, 산림헬기도입·운영 571억원, 농촌용수개발 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정부안의 감액규모보다 더 크다.

확대 등급 사업 중 우선적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한 핵심사업에서도 사전협의안의 투자방향과 정부예산안 간 증감 불일치가 나타난다.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은 전년 대비 68억원,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기상청)은 14억원,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성평등가족부)은 5억원, 수색구조역량강화(해양경찰청)는 4억원 가량 감소하였다.

[2027년도 사전협의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 등급 사업 중 정부안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장 산재)	11,395	36,524	투자확대	4,821	△31,703	△6,574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장 산재)	36,376	40,271	투자확대	33,721	△6,550	△2,65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총액)(도로교통재난·사고)	735,983	740,730	투자확대	625,586	△115,144	△110,397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항공교통재난·사고)	3,527	4,057	투자확대	2,998	△1,059	△52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지진)	9,384	7,976	투자확대 (핵심사업)	7,985	9	△1,399
	지상·고층기상관측망확충 및운영(풍수해)	20,607	22,107	투자확대	19,909	△2,198	△69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하천정비(풍수해)	745,361	775,011	투자확대 (핵심사업)	633,557	△141,454	△111,804
	화학제품 안전관리 (생활제품사고)	23,432	28,012	투자확대	22,883	△5,129	△549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	69,640	88,358	투자확대	64,892	△23,466	△4,748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가축전염병)	14,843	29,100	투자확대	14,457	△14,643	△386
	농촌용수개발(가뭄)	213,445	255,165	투자확대	186,714	△68,451	△26,731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법무부	전자감독(범죄)	37,266	43,193	투자확대 (핵심사업)	37,195	△5,998	△71
보건 복지부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대응체계지원(구조,구급및 응급의료)	16,371	17,921	투자확대	14,381	△3,540	△1,990
산림청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산사태)	32,347	33,735	투자확대 (핵심사업)	25,524	△8,211	△6,823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불)	193,826	217,260	투자확대	160,155	△57,105	△33,671
성평등 가족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범죄)	4,798	4,787	투자확대 (핵심사업)	4,288	△499	△510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구조,구급및응급의료)	8,129	9,639	투자확대 (핵심사업)	8,126	△1,513	△3
	국립소방병원 운영 (구조,구급및응급의료)	41,451	48,683	투자확대	41,148	△7,535	△303
식품의약 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식품사고)	1,873	4,299	투자확대	1,328	△2,971	△545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 (구조,구급및응급의료)	5,494	5,654	투자확대 (핵심사업)	5,153	△501	△341
해양경찰청	수색구조역량강화 (선박재난·사고)	15,082	38,942	투자확대 (핵심사업)	14,672	△24,270	△410
해양 수산부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선박재난·사고)	9,689	14,425	투자확대	9,238	△5,187	△451
	양식등재해대책비 (재난구호및복구)	49,310	51,336	투자확대	35,401	△15,935	△13,909
행정 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풍수해)	5,800	13,800	투자확대	4,872	△8,928	△92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안전관리체계)	1,942	1,942	투자확대	1,907	△35	△35
	비상대비훈련(전시재난·테러)	1,038	1,131	투자확대	1,029	△102	△9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재난안전관리체계)	2,741	2,874	투자확대	2,718	△156	△23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 (정보화)(재난안전관리체계)	129,073	130,071	투자확대	128,983	△1,088	△90
합계		2,440,223	2,667,003	-	2,113,641	△553,362	△326,58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사전협의안에서 차년도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친 최종 정부안에서 상당수 사업이 전년보다 감액되었고, 감액사업 28개 중 27개 사업에서 정부안이 부처요구안보다 감액[33]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당국 심의과정에서 사전협의 결과가 상당 폭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확대 등급 중에서 별도로 선정되는 핵심사업은 일반 확대사업보다 정책적 우선도가 높은 사업을 구분하여 재정당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핵심사업은 부처의 중점추진 여부와 기획예산처의 차년도 예산심의 방향까지 사전에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점에서, 핵심사업이 재정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것은 사전협의와 예산편성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또는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정부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투자확대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심의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정책적 중요성뿐 아니라 차년도 재정소요와 집행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투자등급과 재원소요 간 정합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투자축소 등급 중 정부안 증액 사업

2027년도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상당 규모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재난안전 측면의 투자우선순위와 실제 자원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사전협의 제도의 정책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서 '투자축소' 의견이 제시된 사업 중 8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전년 본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사업의 부처요구액은 총 9,646억원이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1조 6,907억원이 반영되어 약 7,261억원(75.3%) 증액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 1조 4,017억원과 비교하여도 약 2,891억원(20.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과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33)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안이 증가한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9백만원 증액) 사업의 정부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원 감액되었다.

개량' 사업은 부처요구안보다 각각 3,850억원, 2,795억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찰청, 식약처 및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서도 사전협의의 투자축소 의견과 달리 정부안이 부처요구안보다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7년도 사전협의결과 투자축소 등급 사업 중 정부안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경찰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범죄)	24,941	18,874	축소	67,183	48,309	42,242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철도교통재난·사고)	760,561	424,927	축소	809,931	385,004	49,370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철도교통재난·사고)	595,552	506,164	축소	785,692	279,528	190,14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수산물검사 (식품사고)	2,391	2,291	축소	2,401	110	10
	수입식품안전관리 (식품사고)	7,925	5,928	축소	9,429	3,501	1,504
	식품관리운영 (식품사고)	2,060	944	축소	4,896	3,952	2,836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의료제품사고)	4,846	2,224	축소	5,238	3,014	39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재난안전관리체계)	3,390	3,275	축소	5,975	2,700	2,585
합계		1,401,666	964,627	-	1,690,745	726,118	289,07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안에서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서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재난안전 측면에서 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려는 사전협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사전협의 결과와 상반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근거가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되지 않을 경우 부처 간 정책조정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사전협의 결과와 다르게 투자축소 사업을 증액하는 경우 재난안전 측면의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증액되거나 사전협의 등급과 정부안 편성방향이 상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제도 분석

가. 반복적인 성과부진 최소화 필요

(1) 연례적인 성과부진 문제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다수 사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평가 이후의 환류가 실질적인 성과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조·추진방식·성과지표를 점검하여 성과부진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34], 37개의 사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국토교통부),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사업(법무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보건복지부), 산불방지대책 사업(산림청),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사업(소방청), 식품관리 운영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3회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고용노동부), 우체국보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특정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 부처에 분포한다. 미흡 판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보통 등급 이상으로 개선된 이후에 다시 미흡으로 하락한 사례도 있어 일시적인 개선 이후 그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재난 대응 역량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반복 미흡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34)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재난안전사업의 평가는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6년도 평가는 2025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평가까지는 기존 각부처 평가(50%)와 행정안전부 평가(50%)의 이원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3년도 평가부터는 각 부처 자체평가를 100% 반영하여 1차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2022년 8월 당시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수립한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35]에서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 재설계(부처) 및 컨설팅(행안부)을 실시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으나, 3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 등급 사업]

부처명	사업명	미흡 등급 판정	
		횟수(회)	연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2	2023년,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3	2023년, 2024년, 2026년
	우체국보수	2	2022년, 2023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3	2023년, 2024년, 2025년
	철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2	2024년, 2026년
기상청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2	2023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체처리지원	2	2023년, 2025년
	축산물 HACCP 지원	2	2024년, 2026년
	축산식품안전관리	2	2025년, 2026년
법무부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3	2023년, 2024년, 202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	2022년, 2023년, 202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2	2023년, 2025년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3	2024년, 2025년,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관리(융자)	2	2024년, 2025년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3	2023년, 2024년, 2026년
	119구조장비확충	2	2023년, 2026년
	소방행정정보화(정보화)	2	2024년,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운영	3	2022년, 2023년, 2025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3	2022년, 2024년, 2025년
	온라인 식의약안전 관리운영	2	2024년,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2	2025년, 2026년
	방재환경기반 구축	2	2022년, 2023년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2	2023년, 2024년
질병관리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2	2023년, 2026년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2	2025년, 2026년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2	2024년, 2026년

35) 기획재정부,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2022.8.22. 국무회의 발표자료

부처명	사업명	미흡 등급 판정	
		횟수(회)	연도
	항공기도입	2	2023년, 2024년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2	2023년, 2025년
	항만하역장근로자재해예방시설지원	2	2023년, 2024년
행정안전부	침수우려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	2	2024년, 2026년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	2022년,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장미세먼지관리사업	2	2024년, 2025년
	도림천일대 침수방지사업	2	2024년, 2026년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2	2022년, 2023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금강수계)	2	2025년, 2026년
	공공폐수처리시설	2	2023년, 2024년

주: 부처명은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 평가제도가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환류가 실제 성과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의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개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흡 사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가 평가 이후 개선계획 수립이나 후속조치가 평가상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업구조·추진방식·성과지표 등 성과부진의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원자력안전규제,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항공안전체계구축 사업 등 재난의 예방·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연속 미흡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재정사업 성과 부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가 부처별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흡 등급이 반드시 절대적인 성과부진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단순히 반복적인 미흡 횟수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실제 정책효과가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평가결과와 예산안의 연계 강화 필요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일부 사업의 예산이 다음 연도에 증액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반복적인 성과부진의 원인을 외생적 요인과 개선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투자 또는 구조개편 등 차등적인 예산환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는 평가결과와 다음 연도 예산안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앞의 표에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사업(행정안전부 소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과 같이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미흡 등급을 2회 이상 받았지만 2026년도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아 2027년도 예산안이 증액된 사례가 있다.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사업(법무부 소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보건복지부 소관) 등은 2026년도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2027년도 예산안이 감액되지 않고 증액되었다.

반면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사업(질병관리청 소관),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해양경찰청 소관),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은 2026년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은 전년 대비 238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1,113.8% 증액되었고, 식품관리 운영 사업이 137.7%,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도 107.8%로 크게 증액되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반복적 미흡 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6년 평가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B-A)/A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식품안전관리	미흡	2,161	4,479	2,318	107.3
법무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보통	3,856	3,922	66	1.7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보통	13,559	13,658	99	0.7
소방청	소방행정정보화(정보화)	보통	1,325	1,538	213	16.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운영	보통	2,060	4,896	2,836	137.7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보통	4,846	5,238	392	8.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62,989	64,089	1,100	1.7
	방재환경기반구축	보통	8,337	8,487	150	1.8
	원자력안전기반조성	보통	27,202	30,044	2,842	10.4
질병관리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미흡	3,907	6,946	3,039	77.8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미흡	17,503	36,372	18,869	107.8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보통	19,631	20,169	538	2.7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우수	4,934	5,090	156	3.2
기후에너지환경부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	미흡	2,142	26,000	23,858	1,113.8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금강수계)	보통	2,534	2,748	214	8.4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110,042	160,418	50,376	45.8

주: 부처명은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재정당국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반복적인 성과부진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환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상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예산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난 발생 및 피해규모는 호우·폭염·산불 등 이상기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사업 주관부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처의 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확충이나 장비 보강이 미흡한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성과개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미흡 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과부진의 원인이 외생적 요인에 있는지, 사업설계·집행·성과관리 등 부처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부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에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감액보다는 재난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사업규모와 재정투입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업추진 방식, 집행부진, 부적절한 성과지표, 미흡한 사업관리 등 부처의 개선노력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연도 평가와 예산편성에 보다 엄격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단순한 등급 산정이나 일률적인 지출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성과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투자와 구조개선을 선택적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예산환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일회성 성과부진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엄격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방식 변경, 사업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보다 근본적인 사업재설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상위평가 관리 강화 필요

연도별 상위평가 결과, 일부 부처가 반복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고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평가의 책임성과 상위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평가 후속처리 이행과 실질적인 사업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소관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순위를 정하여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상위평가를 통해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가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4월에 공개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총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8개 부처는 '적정', 4개 부처는 '부적정'으로 확정되었다. 적정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가 최종등급으로 인정된 반면, 부적정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사업별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는 최초 상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재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판정을 받아 자체평가 결과를 인

정받았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재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행정안전부가 사업별 평가등급을 직접 부여하였다. 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최종 부적정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2026년 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단위: 개, 백만원)

부처	사업 수	'25년 예산	상위평가 결과	평가결과 확정 방식
경찰청	8	273,415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과기정통부	3	65,336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국토부	29	4,611,817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기상청	20	157,804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기후부	52	3,206,626	부적정(재평가)	행안부 등급 부여
노동부	7	1,234,859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농식품부	18	1,649,505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농진청	2	4,960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방미통위	2	4,046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법무부	1	2,760	부적정(재평가 미실시)	행안부 등급 부여
복지부	12	312,456	부적정(재평가 미실시)	행안부 등급 부여
산림청	4	451,742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산업부	4	12,858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성평등부	3	48,985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소방청	15	156,167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식약처	30	132,863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외교부	2	15,802	부적정(재평가)	행안부 등급 부여
원안위	6	139,012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질병청	18	758,119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해경청	11	168,423	적정	자체평가 결과 인정
해수부	25	492,867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행안부	19	206,313	적정(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인정
합계	291	14,106,735	-	-

주: 부처명 가나다순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개 중앙부처가 1회 이상 최종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 횟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법무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부적정 판정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2023년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후 재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4년과 2026년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회 연속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재평가 점수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하거나(2023년), 재평가 미실시(2024년),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이 미흡하였다(2025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2024년, 2026년)와 외교부(2025년, 2026년)가 각각 2회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1회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은 경찰청(2024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5년), 소방청(2025년), 성평등가족부(2025년), 질병관리청(2023년),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등이다. 이들 부처는 1차 지적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기반 평가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재평가 점수 기준이 미달하였다. 특히 상위평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조차 2025년에 증빙자료 부재 지적에 대한 보완 미흡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결과 자체평가 부적정 판정 부처]

부처명	상위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		
	횟수(회)	해당 연도	부적정 사유 등
경찰청	1	2024년	• 1차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재평가 미실시(1차 결과에 따른 등급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	2026년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의 구체성 부족, 증빙자료 검토 기반 평가내역 확인 불가(점수 미부여 및 등급 불일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2025년	• 1차 부적정 판정 후 재평가 미실시
법무부	4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2023년: 부처 재평가 결과 미제출 • 2024년: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재평가 미실시 • 2025년: 상위평가의 증빙자료 부재 지적에 대한 보완 없이 재평가 제출(등급 일치율 50%로 기준 미달) • 2026년: 재평가 미실시
보건복지부	2	2024년, 2026년	• 2024년: 재평가 미실시 • 2026년: 재평가 미실시
소방청	1	2025년	• 자체평가 결과 미제출 및 재평가 결과 점수(42점)가 상위평가 적정 기준(70점) 미달
성평등가족부	1	2025년	• 증빙자료 부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 재평가 제출(등급 일치율 33% 및 점수 차이 11.0점으로 기준 미달)

부처명	상위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		
	횟수(회)	해당 연도	부적정 사유 등
외교부	2	2025년, 2026년	• 2025년: 자체평가 미실시 및 재평가 점수(57점)가 적정 기준(70점) 미달 • 2026년: 재평가 결과 등급 불일치율이 높고 점수(38점) 기준 미달
원자력안전위원회	3	2023년, 2024년, 2025년	• 2023년: 재평가 점수(40점)가 적정 기준(70점) 미달 • 2024년: 재평가 미실시 • 2025년: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미흡(10점 미만) 및 재평가 점수(56점) 기준 미달
질병관리청	1	2023년	• 1차 상위평가(21점) 후 부처 재평가 결과 미제출
행정안전부	1	2025년	• 증빙자료 부재 지적에 대한 보완 미흡(행안부 재점검과 점수 차이 ±3.5점으로 적정 기준 미달)

주: 부처명은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행정안전부 상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부처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기보다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부처는 상위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고도 재평가를 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최종 부여하는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각 부처 평가(50%)와 행정안전부 평가(50%) 방식에서 2023년부터 각 부처 자체평가(100%) 및 행정안전부 상위평가(메타평가)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각 부처가 부적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책임성과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상위평가의 감점 요인과 부적정 사유를 보면, 주로 증빙자료 누락, 보고양식 미준수, 평가의견 구체성 부족, 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 형식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즉 자체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한 등 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재난안전사업의 재난예방 효과나 국민안전 체감 성과 등 실질적 성과검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평가 미실시, 관련 서류 미제출, 반복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는 부처에 대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투자우선순위 감점 폭을 조정하는 등 부처 차원의 평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부적정 및 미흡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등급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반복적으로 부적정 등급을 받는 부처가 있으므로, 현행 상위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평가 가이드라인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평가 결과, 동일 재난안전사업에 대하여 결과가 상반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데,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성과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평가 간 상반된 결과를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제도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다가, 2026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평가 범위에 재난안전사업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난안전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모두 받게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상반기에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은 2026년도 예산 기준으로 2,487개 사업, 185조 4,354억원 규모이다.

평가 결과,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개선'이 1,497개(60.2%)로 가장 많았으며, '감액' 858개(34.5%), '정상추진' 89개(3.6%), '통합' 40개(1.6%), '폐지' 3개(0.1%)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사업개선 대상이 124조 5,192억원으로 전체 평가대상 예산의 약 67.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감액 대상은 50조 9,567억원으로 전체의 약 27.5%였으며, 정상추진 사업은 5조 7,763억원으로 약 3.1% 수준이었다. 통합 대상은 4조 1,688억원, 폐지 대상은 145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감액·폐지·통합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사업수로는 901개 사업(36.2%), 예산액은 55조 1,400억원(29.7%)이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구분	'26년 평가대상	평가 결과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사업 수	2,487	89	1,497	858	3	40
예산액	1,854,354	57,763	1,245,192	509,567	145	41,688

주: 평가대상 기관수는 총 58개임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2026.5.18.)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평가등급이 상반된 사업들이 존재한다. 먼저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의견을 받은 사업은 총 11개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는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철도치안관리,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산림헬기도입·운영, 소방교육훈련운영, 국가결핵예방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음에 따라 성과평가 환류계획에서 대부분 15% 내외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특히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산림헬기도입·운영, 소방교육훈련운영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재정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재난안전사업평가가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효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재정지원 필요성·집행효율성·지출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감액 사업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26 통합재정사업평가	
		'25	'26[1)]	결과	환류계획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38.0%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기상청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26 통합재정사업평가	
		’25	’26[1)]	결과	환류계획
농진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방미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6.4%
성평등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0.23%
소방청	소방교육훈련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3.9%
질병청	국가결핵예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행안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주: 1) 재난안전사업 ’26년 평가란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26년에 실시한 평가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의견을 받은 11개 사업은 모두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업의 예산은 2026년 총 2,969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2,510억원으로 약 459억원(15.5%) 감소하였다. 감액률은 사회적약자보호활동이 21.7%로 가장 높았고, 재난방송운영지원 18.4%, 산림헬기도입·운영 17.4%, 철도치안관리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액 규모로는 산림헬기도입·운영이 337억원 감소하여 전체 감액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국가결핵예방은 4.1% 감액되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으며,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10~15% 내외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실제 차년도 예산안은 감액되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감액 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26년 예산 (A)	’27년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6,491	18,462	14,454	△4,008	△21.7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10,234	13,599	11,363	△2,236	△16.4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10,778	9,384	7,985	△1,399	△14.9
기상청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6,678	4,712	4,178	△534	△11.3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B-A)/A
농진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1,940	2,840	2,414	△426	△15.0
방미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2,686	3,286	2,680	△606	△18.4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93,858	193,826	160,155	△33,671	△17.4
성평등부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518	4,798	4,288	△510	△10.6
소방청	소방교육훈련운영	3,445	3,204	2,759	△445	△13.9
질병청	국가결핵예방	39,051	39,472	37,835	△1,637	△4.1
행안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3,354	3,344	2,936	△408	△12.2
합계		194,033	296,927	251,047	△45,880	△15.5

주: 재난안전사업의 '26년 평가는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에 대하여 '26년에 실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반면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정상추진'인 사업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원자력안전규제 등 3개 사업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는 성과·사업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정상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정상추진 사업 현황]

부처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26 통합재정사업평가	
		'25	'26[1)]	결과	환류계획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보통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질병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우수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주: 1) 재난안전사업 '26년 평가는 전년도인 '25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26년에 실시한 평가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3개 사업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 등급을 받았던 사업 중 승강기안전관리개선은 3.8% 감액된 반면,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18.3%, 원자력안전규제는 1.7% 증액되어 재난안전사업 및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정상추진 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B-A)/A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5,872	6,330	6,091	△239	△3.8
질병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7,338	7,145	8,452	1,307	18.3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62,159	62,989	64,089	1,100	1.7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결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7년도 예산안 감액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정상추진 등급을 받아 2027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보다 재정효율성과 지출구조조정을 중시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선하여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평가 제도는 일부 평가항목에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상반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평가제도의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조정·해석하고 최종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재정당국이 정부안 편성단계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각 부처의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사업도 일반 재정사업과 유사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동 결과보고서에서 재난안전사업의 특성과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인 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를 보면,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 다른 일반사업과 동일한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는 감액

이었다. 감액의 근거로는 정보시스템 요율 과다, 인건비 불용 반복 등으로 주로 집행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 사업의 성과를 재난안전의 측면에서 별도로 평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의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요약)]

ㅇ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 재정사업 필요성 :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유사중복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원규모 적정성 - 집행 효율성 : 집행 적정성,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환류 및 개선노력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ㅇ 평가결과 : 감액 ㅇ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내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재정사업평가의 핵심 사항인 ①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요율 과다 ②조사연구비 효과성 입증 부족 ③ 공무직 인건비 불용 반복 ④ 대면교육 목표 미달성 등에 대한 부처 소명이 해소되지 않음 - 사업전체 예산 규모의 조정 필요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26)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2개 평가의 결과에서, 한 평가에서는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판단하는 상충된 시그널을 줄 경우, 주관부처의 재난안전사업 관리와 예산편성 방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총괄기관으로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실익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통합재정평가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별다른 협의 없이 증액될 경우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성과관리 및 환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36]

36) 다만 재난안전사업은 재난발생 빈도·강도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부진의 원인과 추가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가. 추진체계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사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편성된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재난안전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사전협의와 사업평가를 총괄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안 편성과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다음 도표는 지금까지 논의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제도, 사업 평가제도(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포함)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각 부처 간의 기능·역할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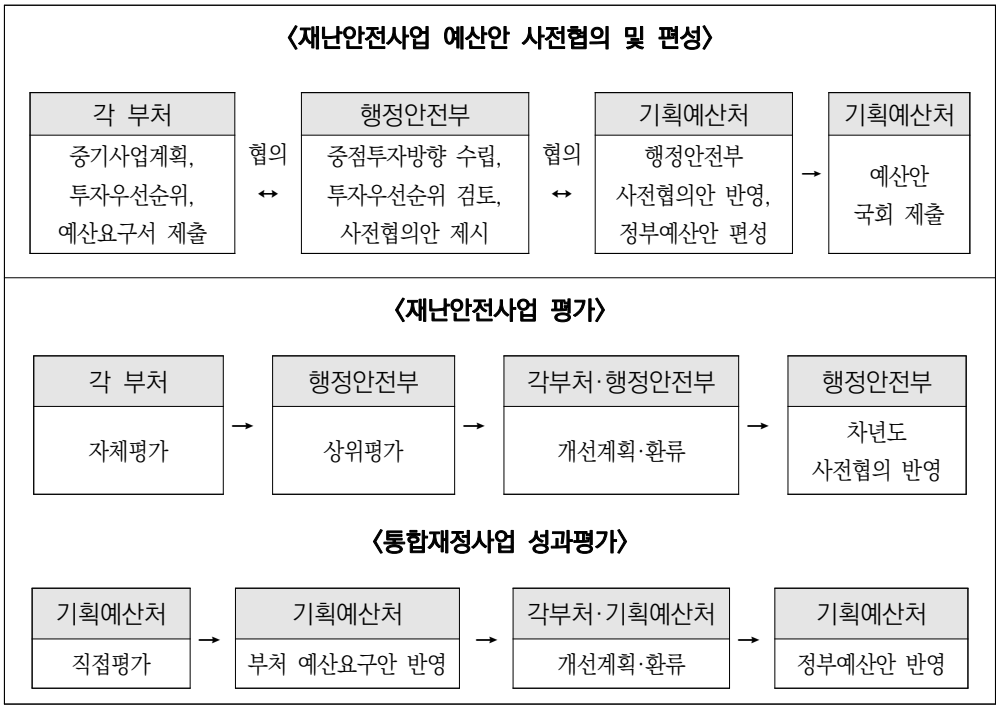
먼저 예산안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예산안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에 각각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점투자방향 수립,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및 사전협의안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한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행정안전부의 상위평가 및 결과 확정, 미흡사업 개선계획 수립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사전협의에 환류된다. 이와 별도로 기획예산처는 2026년부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부처 예산요구 및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추진체계]

〈재난안전사업 부처별 주요 기능〉

각 부처	협의 ↔	행정안전부	협의 ↔	기획예산처
사업 발굴·계획, 예산요구, 자체평가		사전협의 총괄, 재난안전사업 평가 총괄		정부예산안 편성,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진조직 및 제도 정비 필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와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과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예산안 편성에 대한 조정권한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담당인력 및 지원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협의 결과의 환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본부장(차관급)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핵심 조직이다. 동 본부는 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 등 3개 실, 안전정책국·예방정책국·재난안전정보통신국 등 11개 국·심의관 등, 안전정책총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 등 45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



※관련 소속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자료: 행정안전부 누리집

동 본부의 주요 실국별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안전예방정책실은 재난안전정책 총괄·조정, 예산 사전협의·사업평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재난실은 재난 대비·대응·복구 정책과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및 재해예방사업을 총괄하며, 사회재난실은 사회재난 관리정책 수립, 안전점검·원인조사 및 분야별 사회재난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주요 부서별 기능]

구분		기능
안전예방 정책실	안전정책국 (4개과)	• 안전관리 정책 및 국가안전관리계획 총괄·조정 •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평가, 산업·연구개발 지원
	예방정책국 (4개과)	• 재난예방 정책·안전기준 및 생활안전 제도 총괄 • 어린이·보행·승강기 안전, 안전문화·국민안전교육
	재난안전정보통신국 (3개과)	• 재난 예·경보 및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공유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5개과)	• 재난 대비·대응·복구 정책·제도 총괄 • 재난대비훈련·자원관리, 기후재난·재해영향평가
	자연재난대응국 (5개과)	• 풍수해·지진·화산재해 등 자연재난 대응 총괄 •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및 재해위험지역·소하천 정비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3개과)	• 사회재난 관리정책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재난 우려시설 안전점검, 재난·사고 원인조사·분석
	사회재난대응국 (5개과)	• 사회재난 대응체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국토·산업, 보건·사회, 농축산·해양, 환경·산림 • 분야별 재난 대응 및 관계기관 협업

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관, 비상대비정책국 등은 생략함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도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에 291개 사업, 14.1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2026년 6월에는 425개 사업, 21.6조원 규모의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와 사업평가 업무를 안전정책국 소속 안전사업조정과의 담당 직원 3명이 수행하고 있어, 업무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안전사업 평가(1~4월)와 예산 사전협의(1~6월)의 수행 기간이 중첩되어 상반기에 업무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도 차년도 성과목표·지표의 수립·검토, 평가결과의 환류 및 미흡사업 개선관리 등의 업무가 이어지고 있어 연중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사업별 투자적정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유사한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 편성에 연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매년 1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투자방향 수립, 5월 예산요구서 제출, 6월 심의결과 기획예산처 통보 등 주요 추진절차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

구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주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규모	27개 부처 425개 사업 21.6조원('27년 사전협의 기준)	32개 부처 1,312개 사업 33.8조원('26.9월)
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절차	(각부처) 중기사업계획 제출(1월) → (행안부) 정부 재난안전사업 중점투자방향* 설정(3월) → (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5월) → (행안부) 사전협의(6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기획처 통보(6.30) → (기획처) 예산 편성(9월)	(각부처) 중기사업계획 제출(1월) → (과기부)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3월) → (기획처) 지출한도 설정 → (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5월) → (과기부) 예산 배분·조정(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기획처 통보(6.30) → (기획처) 예산 편성(9월)
심의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의장 : 대통령, 이외 부의장(1명), 민간위원 등
관련예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 1.16억원('26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89.4억원('26년), KISTEP 연구운영비 지원 : 327.9억원('26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35.7억원 등('26년)
심의부서	안전사업조정과(1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1국5과) - 연구예산총괄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공공에너지조정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생명기초조정과
지원조직	국립재난안전연구원(3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6본부 1부 1단 21센터 6실 7팀, 1부설)

자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두 제도는 심의기구의 위상과 전담조직 및 전문지원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투자심의국(1국 5과)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관련 업무를 수행·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과)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일부 인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제도는 예산에 대한 조정권한의 범위와 기획예산처 정부예산안 편성에 연계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는 행정안전부가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투자확대·투자유지·투자축소 등급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액을 직접 조정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는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의견 제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구체적인 예산 배분·조정 내역까지 심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도 차이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 모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의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법률상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예산 배분·조정 권한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는 연구개발사업 배분·조정에 비해 재정당국의 예산안 편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관련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법률에 근거한 법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에 비해 전담조직 및 전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예산 배분·조정 권한과 심의결과의 예산안 연계 구속력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투자확대 등급으로 분류한 사업이 정부예산안에서 감액되거나 투자축소 등급 사업이 증액되는 등 사전협의결과와 정부예산안 간 불일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확충과 전문지원조직의 기능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간 협의·조정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협의결과의 예산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 효율화 필요

첫째,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23년 각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나,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으로 유사한 평가기준에 따른 중복평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평가항목과 절차를 조정하는 등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까지 재난안전사업은 각 부처 자체평가 50%와 행정안전부 평가 50%를

종합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시달하였다. 자체평가 단계에서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도를 주로 평가하였고, 행정안전부 평가단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성과우수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기여도와 제출기한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였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체계(~2022년)]

부처 자체평가

▸ 부처 자율평가로 실시(평가대상과 평가지표는 행안부에서 시달)

단계	평가 지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예산 집행률, 환류 등)	30
결과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	20

+

행안부 평가

▸ 행안부 평가단에서 평가

단계	평가 지표	배점
계획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지표 적절성)	30
결과	사업 성과의 우수성	20

※ 가감점 : 사회적 가치 기여도(가점 3점), 제출기한 미준수(최대감점 5점)

⬇

결과 종합

▸ 자체평가와 행안부 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점수·사업 등급 도출
※ 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 확정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평가제도의 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평가중복 및 피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정부업무평가 표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당시 기재부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은 과기부 소관, 재난안전사업은 행안부 소관, 균형발전사업은 균형위 소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 소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기부 소관으로 하여 '1사업 1평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100% 반영), 행정안전부는 상위평가(메타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소관사업을 평가하고, 해당 사업부서와 이견조정을 거쳐 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상위평가위원회

를 통해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적정(70점 이상) 및 부적정(70점 미만) 부처를 판정한다. 부적정 부처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는 해당 결과를 재점검하여 평가 점수 및 등급을 최종 부여한다.

[개편된 재난안전사업 평가체계(2023년~)]

부처별 자체평가

단계	평가항목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신규25점 / 계속10점)
	환류 및 개선 노력(신규0점 / 계속15점)
관리	사업관리 적정성(12점)
	사업 집행의 적정성(8점)
결과	성과 달성도(30점)
	성과 우수성(25점)
가점	도전적 성과 목표치 설정(+3점)
	행안부 컨설팅 결과 반영(+3점)
	사업집행의 절감(+1점)
감점	부당행위 및 일정 미준수(-3점)

행안부 상위평가

기준	점검항목
구성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5점)
운영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점)
과정	평가의견의 명확성·구체성(15점)
	증빙자료의 적절성(10점)
결과	등급 부여의 적절성(40점)
	점수 부여의 적절성(20점)
감점	평가절차 준수 여부(-5점)

주: 평가항목은 2026년도 평가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그 이후 2025년까지 재난안전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자체평가 방식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26년부터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재난안전사업이 있는 부처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하여 두 종류의 평가를 모두 받게 되었다. 2023년도 재난안전사업 개편의 주요 사유가 피평가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사업 1평가'를 도입한 것이었는데, 2026년부터 통합재정사업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부처는 재난안전사업과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2026년부터 각 부처는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겹치는 중복적인 두 평가를 유사한 시기(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 전반부에서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을 살펴보았듯이, 두 평가제도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업계획, 환류·개선, 사업관리·예산집행, 성과달성도 및 효과성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평가기준의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 특히 성과달성도, 외부 지적사항 개선, 집행실적,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등은 양 평가에서 모두 고려되는 항목이다.

다만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대응역량 제고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특성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재정지원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지출효율성을 보다 폭넓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 달성도·우수성을 평가할 때 재난안전사업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없어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이 얼마나 고려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시행으로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모두 받게 되어 부담이 가중되므로,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평가항목과 절차를 조정하여 피평가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안전사업평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비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각 부처가 평가에 대응하는 우선순위가 낮아져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부터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평가를 받는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차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사업평가보다 통합재정사업평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둘 가

능성이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평가 결과와 부처 요구안을 반영하여 사전협의안을 마련한 후 이를 재정당국에 제출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안을 통해 개별 사업의 투자 확대·유지·축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뿐, 정부예산안의 규모를 직접 조정할 권한은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7]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전협의안을 토대로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어 그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 간 예산편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이한 경우, 각 부처가 실질적인 예산 증감과 연계되는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면서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실익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와 사전협의안이 정부예산안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평가 간 연계·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당국이 사전협의 결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안전 분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 전과 같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안전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평가를 주관하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에 연계함으로써 피평가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정책목표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사업의 제도와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의 분류체계, 예산 사전협의, 사업평가 제도,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난위험과 재정투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산 분류에서는 법령상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되는 활동단계 가운데 대비와 대응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함에 따라 폭염 대응 활동이 다른 재난유형의 사업에 포함되어 폭염 관련 예산으로 구분·집계되지 않아, 재난유형별 재정투입과 정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대비·대응이 혼재된 세부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점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재편입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목구조 개편으로 예산액만 반영되고 사업 수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조속히 확정하여 예산안 심의기간 내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결과가 정부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사전협의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협의는 재난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협의에서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로 분류된 사업이 정부예산안에서 오히려 감액되거나 투자축소로 분류된 사업이 증액되는 등 투자등급과 실제 예산의 증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될 경우 재난안전 측면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사전협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과 재원소요를 함께 검토하여 투자등급과 재원배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사전협의 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안전사업 평가가 성과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가 예산에 환류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평가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는 등 평가를 통한 환류가 실질적인 성과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부진의 원인을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과 같은 외생적 요인과 사업설계·집행 등 개선 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변경과 사업구조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근본적인 사업재설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평가 미실시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상위평가 후속처리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2026년부터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평가와의 중복·상반된 결과를 조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평가제도 간 연계체계를 정비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안전사업의 다부처 추진체계가 실질적인 예산 조정과 성과환류로 이어지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평가제도 간 연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사업평가를 총괄하며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과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다부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 291개 사업(14.1조원)의 평가와 2027년도 425개 사업(21.6조원)의 사전협의를 수행하면서도 관련 실무를

담당 직원 3명이 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별 심층 검토와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도에 비해 전담조직과 전문지원체계가 취약하고 구체적인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제한적이며,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에 따라 각 부처에서 유사한 평가를 중복 수행하는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담인력과 전문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간 사전협의 결과의 예산 반영·미반영 사유를 공유·조정하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중복 평가항목·절차를 조정하여,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 실시 이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발간일 2026년 11월 1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BN 979-11-6799-272-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6-002329-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